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019.09.02.~2019.09.11.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복지국】**

김 포 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

# 목 차

## ■ 복 지 국

● 복지과 .....	1
● 아동청년과 .....	53
● 노인장애인과 .....	97
● 여성가족과 .....	167
● 체육과 .....	201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부지과





# (취약계층 복지증진) (P - 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5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처리 지원을 통한 공공복지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000	30,000	9,000	7,000	21,000	
국 비						
도 비						
시 비	9,000	30,000	9,000	7,000	21,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17, 18년도 대비 19년도 무연고사망자 발생 빈도율 증가 (`17, 18년 : 3건, `19년도 상반기 : 6건)
- 연고인과 가족관계단절 사유로 인한 무연고사망자 행정처리 건수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제12조 제1항 등
근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 등에 관한 법률</li> <li>·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li> <li>■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li> <li>·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사항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예상치 못한 무연고사망자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
- 무연고사망자 장례절차 및 신문공고 비용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계	= 30,000	
취약계층 복지증진	201-01 사무관리비	·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 2,000,000원*4건 = 8,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무연고사망자 처리비 : 2,000,000원*10건 = 20,000	
	307-01 의료및구료비	· 노숙인 구호비 : 50,000원*40명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수시 :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 접수 시 장례비 지급
- 2019. 수시 : 무연고 사망자 처리결과 신문공고 게시 및 공고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무연고사망자 행정처리 : 총3건 / 6,000천원	
2018년	· 무연고사망자 행정처리 : 총3건 / 6,000천원	
2019년	· 무연고사망자 행정처리 : 총5건 / 10,000천원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0,000	6,000	-	4,000	
2018년	8,000	6,000	-	2,000	
2019년	10,000	10,000	-	-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사회복지8급 홍동균	전화	2619
-----	-----	------------	-----	------------	----	------

#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P - 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02,503
- 사업규모 : 연면적 7,000㎡(지하3층 ~ 지상4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북부권 5개 읍·면 문화 복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확충하여, 지역복지 욕구 충족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959,000			3,959,000	
국 비						
도 비						
시 비		3,959,000			3,959,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민선7기 공약사업인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설계용역비 필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완료 후 사업의 이행시기에 따른 예산 확보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근거내용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	완료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2019.3월	2019.3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욕구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확충
-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예산확보 절실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3,959,000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01-01 시설비	· 부지매입비(LH택지개발조성 원가) : 1,521,000원 * 2,010.4(m <sup>2</sup> ) = 3,000,000 · 설계용역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2종 보통 4.01% ~ 4.17%) = 850,000 · 당선작 시상금 = 85,000 : 설계용역비 850,000,000원의 10% · 조달청 수수료 = 20,000 : 나라장터 기술용역분야 수수료 요율표 적용	
	201-01 사무관리비	·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281,833원) * 1.5일*9명 = 4,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648,000		3,959,000			3,959,000	20,689,000	
공정별	설계비	850,000	850,000			850,000		
	부대비	181,000	105,000			105,000	76,000	
	부지매입비	3,000,000	3,000,000			3,000,000		
	공사비	18,213,000					18,213,000	
	용역비	2,400,000					2,400,000	감리
	기타	4,000		4,000			4,000	심사위원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기본계획 수립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경기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19. 8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서 제출
- 2019. 11 : 설계공모
- 2020. 2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 2021. 3 : 공사착공
- 2022. 10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2018. 9. 17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선정 계획 수립 - 2018. 9. 20 기본사업계획 수립 - 2018. 11. 1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	- 2019. 3 경기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김윤정	전화	2616
-----	-----	------------	-----	----------	----	------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0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2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복지업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근무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000	15,000	14,400		600	0
국 비						
도 비	15,000	15,000	14,400		600	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명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해 사업량 변경(24명→25명)
- 대체인력 신규채용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내용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 50,000원 * 25명 * 12월	= 1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 ~ 현재까지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별 지급
- 2019. 7 :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내시 통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1~12월) : 17,294,550원	
2018년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1~12월) : 14,250,000원	
2019년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1~7월) : 8,450,000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7,400	17,295		105	
2018년	15,000	14,250		750	
2019년	14,400	8,450		5,950	7.31일 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김윤정	전화	2616
-----	-----	------------	-----	----------	----	------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P - 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0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2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복지업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근무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3,050	39,600		-16,550	23,050	
국 비							
도 비		0	3,960		-3,960		
시 비		23,050	35,640		-12,590	23,05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던 특수근무수당(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도비 미지원됨에 따라 도비, 시비 전액 감액
- 8월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실시(7월분까지는 지급 완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근무기간 5년 이상 150,000원 * 17명 * 7월 = 23,050 - 근무기간 5년 미만 100,000원 * 7명 * 7월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 ~ 7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월별 지급
- 2019. 8월부터 :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직접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1~12월) : 36,397,570원	※자체 위탁사업비 지급
2018년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1~12월) : 37,746,760원	※자체 위탁사업비 지급
2019년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1~7월) : 23,050,000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6,907	36,397		510	
2018년	39,000	37,747		1,253	
2019년	39,600	23,050		16,550	7.31일 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길윤정	전화	2616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P - 9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0
- 사업규모 : 상해보험가입자 37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870	3,730	3,600		130	860
국 비						
도 비	1,435	1,900	1,850		50	465
시 비	1,435	1,830	1,750		80	39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상해보험가입지원 대상자 13명 증가(360명→373명)에 따른 예산 필요
  - 시비지원 증가 : 당초 350명 → 366명(16명 증가)
  - 도비지원 증가 : 당초 370명 → 380명(10명 증가)
- 시도비 지원 비율 : 366명(도비 50%:시비 50%) + 7명(도비 100%)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가입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근무의욕 고취
- 도비 100% 지원 시설 :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바람숲 (소재지 : 통진읍)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상해보험료지원 : 10,000원 * 373명 * 1회 = 3,7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가입대상자 확인
- 2019. 03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가입비 지급
- 2019. 09 : 단체상해보험비 미지급금 추가 지급
- 2020. 03 : `19년도 상해보험료 정산 환급금 정산 (중도퇴사자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345명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2018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278명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2019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360명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및 추가 13명에 대한 가입비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500	3,450	-	50	
2018년	2,870	2,870	-	0	
2019년	3,600	3,600	-	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사회복지8급 홍동균	전화	2619
-----	-----	------------	-----	------------	----	------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P - 9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 7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4,000	31,500	18,000		13,500	-12,500	
국 비							
도 비	8,800	6,300	3,600		2,700	-2,500	
시 비	35,200	25,200	14,400		10,800	-1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상반기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금 조기 소진에 따른 하반기 지원비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호
근거내용	5. 보훈처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나라사랑 고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 450,000원 * 70명 = 31,500	도비 20% 시비 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대상자 통보(경기도 → 김포시)
- 2019.1. : 독립유공자(유족) 무료진료증 발급
- 2019.매월. : 약제비 및 진료비 청구 접수 및 지급
- 2019.8.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 39가구 24,000천원	
2018년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 43가구 44,000천원	
2019년	- 상반기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지원 : 49가구 17,361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4,000	24,000	-	-	
2018년	44,000	44,000	-	-	
2019년	18,000	17,361	-	639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 (보훈단체 지원) (P - 90)

## 6.25참전유공자회 차량수리비 지원

###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연중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6.25참전유공자회 대표자 : 최성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차량 부품교체를 통한 차량운행의 안전 도모 및 보훈단체 활동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1,220	41,183	39,822		1,361	-37
시 비	41,220	41,183	39,822		1,361	-37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2010년도에 구입(147,295Km)한 6.25참전유공자회 차량(12인승 봉고)의 부품이 노후화 되어 교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제27조
근거내용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후화 된 부품으로 차량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 예방을 통한 안전운행 도모
- 보훈단체의 활동지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합 계	1,361	1,361	0
보훈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단체 : 6.25참전유공자회 - 사업내용 : 차량수리비 지원 - 산출근거 ·타이어 : 664,000원 ·에어컨냉동오일및냉매완충 : 130,000천원 ·기타부품교체 등 : 567,000원	1,361	1,361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보조사업자 : 6.25참전유공자회 ○ 추진실적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35,912천원 - 간사인건비, 운영비, 수용비 및 공과금, 차량수송인건비, 차량유지비 지원	
2018년	○ 보조사업자 : 6.25참전유공자회 ○ 추진실적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40,879천원 - 간사인건비, 운영비, 수용비 및 공과금, 차량수송인건비, 차량유지비 지원	
2019년	○ 보조사업자 : 6.25참전유공자회 ○ 추진실적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39,822천원 - 간사인건비, 운영비, 수용비 및 공과금, 차량수송인건비, 차량유지비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7년	36,072	36,072	-	35,912	35,912	-	160	160	-	
2018년	41,220	41,220	-	40,879	40,879	-	341	341	-	
2019년	39,822	39,822	-	39,822	39,822	-	-	-	-	6.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 (보훈시설물 유지 관리) (P - 9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양촌 오라니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 안내표지판 훼손 및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교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9,600	23,000	20,000		3,000	-16,600	
국 비							
도 비							
시 비	39,600	23,000	20,000		3,000	-16,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양촌 오라니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 안내표지판 훼손 및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교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호
근거내용	5. 보훈처 위탁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훈시설물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 20,000,000원 ·오라니 31만세운동 기념비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 3,000,000원 * 1개	= 2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9. : 201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 2019.10. :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현충탑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 : 8,640천원	
2018년	- 현충탑 뒤편 및 전기 보수 등 : 7,947천원 - 보훈회관 및 국가유공자회관 보수 등 : 29,134천원	
2019년	- 현충탑, 보훈회관, 국가유공자회관, 현충시설물 등 보수 : 13,839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9,600	8,640	-	960	
2018년	39,600	37,081	-	2,519	
2019년	20,000	13,839	-	6,161	2019.06.30. 집행기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P - 9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양촌읍 양곡2로30번길 46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관리를 통한 독립운동정신 계승 및 애국심 고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88,471	178,603	169,625	4,688	4,290	-9,868	
국 비							
도 비							
시 비	188,471	178,603	169,625	4,688	4,290	-9,868	
기 타							

예산 증감사유

- 독립운동기념관 시설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노후 간판 제작설치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근거내용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독립운동기념관 입구 지주간판 수리를 통한 시설 안전강화 및 시설 홍보효과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78,603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관리비 : 169,892,000원 = 169,892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독립운동기념관 간관 설치 및 소장품 구입 - 간관 설치비 : 2,321,000원 * 1개 - 소장품 구입비 : 2,100,000원 ·독립운동기념관 입구 지주간판 제작·설치 : 4,290,000원 * 1개 = 8,7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독립운동기념관 입구 지주간판 제작·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인건비(일직수당) : 2,550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등) : 133,605천원 - 특별전시회 4회 개최 : 12,992천원 - 자산취득비 : 700천원	
2018년	- 인건비(일직수당) : 2,550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등) : 149,846천원 - 특별전시회 4회 개최 : 13,700천원 - 자산취득비 : 15,219천원	
2019년	- 독립운동기념관 위탁사업비 지급 : 174,313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57,042	149,847	-	7,195	
2018년	188,471	181,315	-	7,156	
2019년	174,313	174,313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P - 9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중국
- 사업규모 : 공연4회, 청소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포시 만세운동 창작음악극 “오래된 내일” 공연, 청소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0,000		120,000	0	120,000
국 비						
도 비		120,000		120,000	0	120,0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3.1만세운동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95,000천원) 및 행사실비보상금(5,000천원) 중 50,000천원을 관내 중고교 순회 공연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념사업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지원 5. 그 밖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2019.3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중고교 학생 순회공연은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위탁으로 추진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범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기념
- 김포시 3·1만세운동 창작 음악극 “오래된 내일” 공연 및 청소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해 나라사랑정신 함양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20,000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일 시 : 2019.9.4.~9.5. - 장 소 : 김포아트홀 - 사업내용 : 김포시 3·1만세운동 창작음악극 시민공연 ·창작음악극 “오래된 내일” 공연비 : 25,000,000원 * 2회 = 50,000	도비10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 탁사업비	- 일 시 : 2019.11월~12월 - 장 소 : 관내 중고교 강당, 중국 - 사업내용 : 김포시 3·1만세운동 창작음악극 관내 중고교 순회 공연 및 청소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창작음악극 “오래된 내일” 순회 공연비: 25,000,000원 * 2회 = 50,000 ·국외여비 : 1,300,000원 * 15명 = 19,500 ·탐방보고회 운영비 : 500,000원 * 1회 = 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2. : 경기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제출
- 2019.02. : 경기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선정
- 2019.06. : 추진계획수립
- 2019.09. : 김포시 3·1운동 창작음악극 “오래된 내일” 시민 공연(2회)
- 2019.11. : 청소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실시
- 2019.11.~12. : 김포시 3·1운동 창작음악극 “오래된 내일” 관내 중고교 순회 공연(2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 2. : 김포시 3·1만세운동 공연 및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계획 수립 - 2019. 5. : 김포시 3·1만세운동 “오래된 내일” 공연 용역 계약 체결 - 2019. 6. : 공연 용역 선금급 지급(34,650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0,000	34,650	-	85,35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 (긴급복지) (P - 9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072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실직, 중한질병, 폭력 등의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623,500</b>	<b>953,000</b>	<b>767,500</b>		<b>185,500</b>	<b>210,700</b>	
국 비	498,800	762,400	614,000		148,400	168,560	
도 비	18,705	28,590	23,025		5,565	6,321	
시 비	114,750	162,010	130,475		31,535	27,06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및 위기사유 확대에 따른 대상가구 증가
- 당초 사업규모 863가구에서 1,072가구로 확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법·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선 지원, 후 심사를 통한 신속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기능 확대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긴급복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긴급복지지원사업 : 889,000원*1,072가구 = 95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7월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19. 7월~12월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현행 법·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총 823가구, 569,667천원)	
2018년	- 저소득 빈곤가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전락 예방(총 1,109가구, 623,450천원)	
2019년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도모(총 930가구, 551,541천원)	6.30.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75,000	674,980	-	20	
2018년	623,500	623,450	-	50	
2019년	767,500	551,541	-	215,959	6.3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동현	전화	2633
-----	-----	------------	-----	------------	----	------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P - 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32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실직, 폭력, 질병 등 위기가구에 신속한 생계·의료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00,000	352,000	212,000		140,000	152,000	
국 비							
도 비	40,000	70,400	42,400		28,000	30,400	
시 비	160,000	281,600	169,600		112,000	121,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위기사유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 당초 사업규모 200가구에서 332가구로 확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법·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위기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1,060,000원*332가구 = 35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7월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19. 7월~12월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현행 법·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총 332가구, 192,494천원)	
2018년	저소득 빈곤가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 전락 예방 (총 261가구, 132,835천원)	
2019년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도모 (총 190가구, 119,968천원)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02,600	192,494	-	10,106	
2018년	200,000	132,835	-	67,165	
2019년	212,000	119,968	-	92,032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9급 조유빈	전화	2634
-----	-----	------------	-----	----------	----	------

#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P - 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3,199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90% 할인) 및 차상위계층(50% 할인) 대상 정부양곡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7,277		47,148	20,129	67,277
국 비		67,277		47,148	20,129	67,277 100%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정부양곡 사업량(16,258포 → 23,199포)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근거내용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할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50% 할인 가격 공급]

※ 2019년도 단가

구분	양곡대금(본인부담금)		택배비	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10kg	1,960원	9,800원	2,600원	
20kg	3,880원	19,410원	2,900원	

○ 지원방법 : 택배를 통한 각 가정 배송 (희망나르미와 계약)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 희망나르미</li> <li>• 사업량 : 23,199포</li> <li>• 지급내용 : 정부양곡 택배비(20kg) = 67,277 - 2,900원 * 23,199포</li> </ul>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8월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매월 : 읍면동 정부양곡 신청대상자 신청 및 접수
- 매월 : 정부양곡 주문 및 배송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li> <li>- 사업량 : 11,466가구 12,981포 [10kg - 10,133포, 20kg - 2,758포]</li> <li>-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중 정부양곡 지원 희망자</li> </ul>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7,148	34,344		12,804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복지7급 이하영	전화	2621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지급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 시설거주자 - 사업량 : 800원 * 400,425개                                 =         320,340 - 사업내용 :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 배부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5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19. 9월 : 추진계획수립
- 2019. 10월 : 물품계약 및 구매
- 2019. 11월 : 읍면동 수요량에 따라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및 대상자 지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하영	전화	2621
-----	-----	------------	-----	------------	----	------

#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P - 9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0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29,028	1,107,799	1,678,215	-33,916	-536,500	-221,229	
국 비	1,063,222	886,239	1,342,572	-6,333	-450,000	-176,983	80%
도 비	39,871	66,468	100,693	-8,275	-25,950	26,597	6%
시 비	225,935	155,092	234,950	-19,308	-60,550	-70,843	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적정 조정(155명 → 106명)에 따른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근거내용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자활근로 기반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107,799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복지도우미형·근로유지형 : 906,250원*16명*12월 = 174,00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 864,628원*90명*12월 = 933,79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2019년 자활근로예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 매월 자활급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자활근로사업(월 평균 83명) - 연 인 원 : 996명 = 시 168명 + 자활센터 828명 - 집 행 액 : 1,076,474천원	
2018년	○ 자활근로사업(월 평균 85명) - 연 인 원 : 1,020명 = 시 144명 + 자활센터 876명 - 집 행 액 : 856,521천원	
2019년	○ 자활근로사업(월 평균 73.5명) - 연 인 원 : 441명 = 시 78명 + 자활센터 363명 - 집 행 액 : 492,709천원	6.30. 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109,471	1,076,474	0	32,997	
2018년	1,329,028	856,521	0	472,507	
2019년	1,644,299	492,709	0	1,151,590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환섭	전화	2623
-----	-----	------------	-----	------------	----	------

#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운영비)) (P - 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북변중로65번길 4-8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활센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7,212	258,368	264,507	-15,199	9,060	1,156	
국 비	180,048	180,870	185,155	-10,639	6,354	822	70%
도 비	11,575	23,250	23,806	-1,368	812	11,675	9%
시 비	65,589	54,248	55,546	-3,192	1,894	-11,341	2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근거내용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
- 자활근로 참여자 증대를 위한 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인건비 지원
- 미세먼지에 취약한 자활근로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역자활센터 운영 : 기존 인건비 3,895,430원*4인*12월 + 추가 인건비 2,860,000원*1인*3개월 = 258,368 + 공기청정기 임대료 53,330원*3대*3개월 + 기타 운영비 62,327,36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8 : 2019년 지역자활센터운영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복지부 추경안 반영)
- 2019.10 : 자활센터 보조금 교부  
 종사자 추가 채용, 공기청정기 임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자활센터 운영비 - 인건비 : 218,628천원 - 기타 운영비 : 11,507천원	
2018년	○ 자활센터 운영비 - 인건비 : 155,965천원 - 기타 운영비 : 54,873천원	
2019년	○ 자활센터 운영비 - 인건비 : 54,979천원 - 기타 운영비 : 20,025천원	6.30. 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30,957	230,135	0	822	
2018년	257,212	210,839	0	46,373	
2019년	249,308	75,004	0	174,304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환섭	전화	2623
-----	-----	------------	-----	------------	----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북변중로65번길 4-8
- 사업규모 : 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가급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000	4,000	5,000		-1,000	
국 비						
도 비	5,000	4,000	5,000		-1,000	1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집행계획 변경
  - 지급대상자 산출기준 : 정원 기준(8명) → 현원 기준(6명) ※ 시 직영에 따른 센터장, 실장 제외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6호
근거내용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복지장적수혜금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50,000원 * 6명 * 12월	=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6 : 2019년도 지역자활센터 변경내시(1차)
- 매월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 기준금액 : 50,000원 - 사업량 : 6명 - 집행액 : 3,708천원	
2018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명칭변경) - 기준금액 : 50,000원 - 사업량 : 6명 - 집행액 : 3,800천원	
2019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기준금액 : 50,000원 - 사업량 : 6명 - 집행액 : 1,800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4,200	3,708		492	
2018년	5,000	3,800		1,200	
2019년	5,000	1,800		3,200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환섭	전화	2623
-----	-----	------------	-----	------------	----	------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P - 9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국민기초, 차상위) 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질환자 및 한부모 가정 등에게 방문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4,351	69,000	86,201		-17,201	14,649
국 비	38,046	48,300	60,341		-12,041	10,254 70%
도 비						
시 비	16,305	20,700	25,860		-5,160	4,395 3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23명→17명)에 따른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 및 재가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수혜자</li> <li>· 사업량 : 17명</li> <li>· 지급내용 : 서비스 비용 지원(월 평균 지원금)</li> <li style="padding-left: 20px;">- 338,240원 * 17명 * 12월</li> <li>· 지원단가</li> <li style="padding-left: 20px;">▶ 월 24시간 제공 = 69,000</li> <li style="padding-left: 20px;">-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336천원)/그외(월316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 월 27시간 제공</li> <li style="padding-left: 20px;">-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366천원)/그외(월355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 월 40시간 제공</li> <li style="padding-left: 20px;">-의료급여 수급자(월555천원 * 3월)</li> </ul>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6.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예탁처: 사회보장정보원)
- ※ 매월 5일, 15일, 25일 : 서비스 비용 정기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 23명	
2018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 20명	
2019년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 16명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52,455	52,455		-	
2018년	54,351	54,351		-	
2019년	86,201	60,520		25,681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9급 양현주	전화	2624
-----	-----	------------	-----	------------	----	------

# (희망키움통장 I) (P - 9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2,000	47,500	42,815	-9,836	14,521	-34,500	
국 비	65,600	38,000	34,252	-7,872	11,620	-27,600	80%
도 비	2,460	2,850	2,569	-589	870	390	6%
시 비	13,940	6,650	5,994	-1,375	2,031	-7,290	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13명→14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 있는 기초생활수급 참여자의 본인적립금(5만원/10만원)에 대하여 소득에 비례해 매칭한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627천원)을 적립하여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희망키움통장 I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급대상 : 희망키움통장 I 참여 대상자 · 사업량 : 14명 · 지급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매칭 지원금) = 47,500 - 282,740원 * 14명 * 12월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2.~11.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2019. 07.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예탁처: 중앙자활센터)
- ※ 매월 23일 ~ 30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희망키움통장 I 추진 실적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19명	
2018년	○ 희망키움통장 I 추진 실적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4명	
2019년	○ 희망키움통장 I 추진 실적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9명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80,000	80,000		-	
2018년	82,000	82,000		-	
2019년	32,979	29,784		3,195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9급 양현주	전화	2624
-----	-----	------------	-----	------------	----	------

## (희망키움통장Ⅱ) (P - 9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5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356,200</b>	<b>263,611</b>	<b>5,379</b>	<b>87,210</b>	<b>356,200</b>	
국 비		284,960	210,888	4,302	69,770	284,960	80%
도 비		21,372	15,817	323	5,232	21,372	6%
시 비		49,868	36,906	754	12,208	49,868	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219명→356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9년도 예산 신규 편성 사업
- 근로·사업소득 있는 저소득 대상자의 본인적립금(10만원 정액)에 대하여 1:1 비율로 매칭한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적립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희망키움통장Ⅱ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급대상 : 희망키움통장Ⅱ 참여 대상자 · 사업량 : 356명 · 지급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지원금) - 83,380원 * 356명 * 12월 = 35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7.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1월, 5월, 8월, 10월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예탁처: 중앙자활센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희망키움통장Ⅱ 추진 실적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03명	6.30.일 기준 (‘19년 신규예산 편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68,990	183,165	-	85,825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9급 양현주	전화	2624
-----	-----	------------	-----	------------	----	------

# (내일키움통장) (P - 9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8,475	24,050	20,105	3,945	-4,425	
국 비	22,780	19,240	16,084	3,156	-3,540	80%
도 비	854	1,443	1,206	237	589	6%
시 비	4,841	3,367	2,815	552	-1,474	1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25명→28명)에 따른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자립·자활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근무한 대상자의 본인적립금(5만원/10만원)에 대하여 1:1 비율로 매칭한 내일근로장려금을 적립해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내일키움통장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급대상 : 내일키움통장 참여 대상자 · 사업량 : 28명 · 지급내용 : 내일근로장려금(월 평균 매칭 지원금) = 24,050 - 71,580원 * 28명 * 12월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2.~11.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2019. 07.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예탁처: 중앙자활센터)
- ※ 매월 23일~30일 : 내일근로장려금 생성 및 적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내일키움통장 추진 실적 - 내일근로장려금 지급 : 26명	
2018년	○ 내일키움통장 추진 실적 - 내일근로장려금 지급 : 25명	
2019년	○ 내일키움통장 추진 실적 - 내일근로장려금 지급 : 28명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3,750	23,750	-	-	
2018년	26,000	26,000	-	-	
2019년	20,105	14,079	-	6,026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9급 양현주	전화	2624
-----	-----	------------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P - 9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50,120</b>	<b>70,758</b>	<b>108,781</b>	<b>1,092</b>	<b>-39,115</b>	<b>20,638</b>	
국 비	40,096	56,606	87,025	874	-31,293	16,510	80%
도 비	1,504	4,246	6,527	65	-2,346	2,742	6%
시 비	8,520	9,906	15,229	153	-5,476	1,386	1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40명→22명)에 따른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청년(만 15~39세)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없이 소득에 비례하여 매칭한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496천원)을 적립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청년희망키움 통장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급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대상자 · 사업량 : 22명 · 지급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매칭 지원금) = 70,758 - 268,023원 * 22명 * 12월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2.~11.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2019. 07.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예탁처: 중앙자활센터)

※ 매월 23일~30일 :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진 실적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6명	'18년 신규사업
2019년	○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진 실적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3명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0,070	50,070		-	
2019년	109,873	70,758		39,115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이남현	담당자	사회복지9급 양현주	전화	2624
-----	-----	------------	-----	------------	----	------

# (기본경비(복지과)) (P - 95)

## 복지과 공용차량 교체 구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1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복지과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통한 복지업무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0,000			30,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0			3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복지과 공용차량(베르나 2007년식/103,027km)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공용차량 교체 구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 제2항
근거내용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복지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통한 효율적 복지업무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기본경비 (복지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지과 공용차량 교체 구입 : 30,000,000원 * 1대 = 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5. : 공용차량 정수 요청 및 승인
- 2019.11. : 공용차량 교체 구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창우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2617
-----	-----	------------	-----	----------	----	------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P - 9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12월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3명(통합사례관리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자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체감도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3,348	96,202	95,026		1,176	2,854
국 비	46,674	48,101	47,513		588	1,427
도 비						
시 비	46,674	48,101	47,513		588	1,42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시간외수당, 출장비 부족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제7조의2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공무원여비규정등
근거내용	-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법 제42조의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기본급, 출장여비, 각종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인건비 지원 단가는 별도 통보)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3명) 시간외수당, 출장비 부족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와 그에 따른 자체재원 매칭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2,672,277원*3명*12개월 = 96,20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4.01. ~ : 통합사례관리사 3명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
- 2018.09 : 읍면동 13개 맞춤형복지팀 설치 완료
- 2019.07 : 통합사례관리사 운영계획 수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통합사례관리가구수: 1,487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건수: 5,624건 - 민간자원 연계금액(현금+현물): 109,326천원	
2018년	- 통합사례관리가구수: 568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건수: 4,996건 - 민간자원 연계금액(현금+현물): 718,621천원	
2019년	- 통합사례관리가구수: 384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건수: 3,257건 - 민간자원 연계금액(현금+현물): 337,123천원	6.30.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91,972	91,236	-	735	
2018년	93,348	90,487	-	2,861	
2019년	95,026	44,715	-	50,311	6.3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복지9급 김희정	전화	2632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아동청년과





#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 (P - 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연중 ○ 위    치 : 김포시 걸포로 76 외
- 사업규모 :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1개소(사무국, 수련관, 진로상담본부, 수련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 활동, 육성, 복지, 보호 지원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865,849	8,585,979	7,757,652	555,211	273,116	720,130	
국 비							
도 비							
시 비	7,865,849	8,585,979	7,757,652	555,211	273,116	720,13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청소년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사무환경조성을 위한 보안지원중단 대비 행정장비 구입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 반영,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제6조
근거내용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자체■	보조□	2018.11월	-	-	-	-	-	2018.10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통진·고촌·양촌·사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관련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 8,585,979	
(재)김포시청소년 육성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사무국	= 6,364,993
		· 청소년수련관(고촌청소년문화의집 포함)	= 662,558
		· 사우청소년문화의집	= 55,111
		· 통진청소년문화의집	= 163,987
		· 양촌청소년문화의집	= 35,425
		· 진로체험지원센터	= 29,994
		· 상담복지센터	= 138,490
		· 청소년수련원	= 1,135,42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9월 : 추경 예산 확보분(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청소년 육성재단(사무국, 수련관, 통진·양촌·사우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18년	- 청소년 육성재단(사무국, 수련관, 통진·양촌·사우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19년	- 청소년 육성재단(사무국, 수련관, 통진·고촌·양촌·사우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941,862	6,391,733	-	550,129	
2018년	7,865,849	6,988,717	-	877,132	
2019년	8,312,863	8,312,863	-	-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김순애	담당자	행정7급 김지연	전화	2595
-----	-------	------------	-----	----------	----	------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P - 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연중                      ○ 위    치 : 김포시 걸포로 76(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규모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학교밖청소년지원 서비스 질 개선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200	4,450	4,200		250	
국 비						
도 비	4,200	4,450	4,200		25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5개월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근거내용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차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 4,450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보장적수혜금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0,000원 × 7명 × 12월 = 4,450 50,000원 × 1명 × 5월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1명 증원분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9월 ~ 2019.12월 :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7명	
2019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200	3,950	-	250	
2019년	4,200	2,150	-	2,05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김순애	담당자	행정7급 김지연	전화	2595
-----	-------	------------	-----	----------	----	------

# (청소년시설확충(공공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 (P - 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1~2019.9월      ○ 위    치 : 김포시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고촌복지회관 3층)
- 사업규모 : 1개소(연면적:429.11㎡)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고촌읍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권역별 균형있는 청소년 문화 활동 기회 제공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0,000	300,000	300,000		0	-100,000	
국 비	200,000	60,000	60,000		0	-140,000	
도 비							
시 비	200,000	240,000	240,000		0	40,000	
기 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근거내용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촌읍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 기반 미비, 권역별 균형있는 청소년시설 설치 필요
- 시설비 입찰차액 등 잔액활용을 통한 청소년문화의집 자산 추가 확충
- 균특예산의 물품구입을 위한 비목편성 금지에 따른 국비, 시비 재원 조정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300,000	
청소년시설 확충	시설비	- 고촌문화의집 건립 리모델링 국 경정 60,000 기정 40,000 국 20,000 = 200,000 시 경정 140,000 기정 180,000 시 △40,000	총 예산액 동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고촌문화의집 건립관련 자산취득 국 경정 0 기정 20,000 국 △20,000 = 100,000 시 경정 100,000 기정 60,000 시 4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18 예산액			2019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2회 추경 (D)			
계						3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0	
	보상비							
	공사비					180,000	0	
	감리비 부대비							
기 타	기자재 구입					10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2 : 고촌읍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9.02~2019.03 :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여성가족부 자문)
- 2019.04~2019.05 : 실시설계안 여성가족부 자문, 계약심사 및 공사 집행
- 2019.06~2019.08 :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08 : 기자재 구입
- 2019.09월 중 : 고촌문화의집 개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노후설비 교체, 샤워실, 공용화장실 보수)	
2019년	- 고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00,000	400,000	-	-	
2019년	300,000	13,373		114,227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김순애	담당자	행정7급 김지연	전화	2595
-----	-------	------------	-----	----------	----	------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동형 일시쉼터))(P - 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9월 ~ 연중 ○ 위 치 : 김포시관내
- 사업규모 : 1개소, 45인승 버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출(징후)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가정·학교·사회 복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165,329</b>			<b>165,329</b>		
국 비		67,785			67,785		
도 비		14,880			14,880		
시 비		82,664			82,66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관내 위탁시설 증가로 유흥가 등에 노출된 위기·취약 청소년들의 보호정책 필요
- 청소년인구 증가에 따른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 대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청소년 이동형 일시 쉼터 1개소 운영비(종사자 6명 인건비 및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인건비	- 인건비 6명*4월	= 70,683	
			- 제수당 6명*4월	= 43,980	
			<b>소 계</b>	<b>= 114,663</b>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500,000원*4월	= 2,000	
			- 회의비 100,000원*4월	= 400	
			- 운영위원회 수당 80,000원*10명	= 800	
			<b>소 계</b>	<b>= 3,200</b>	
		교육비	- 종사자 교육비 300,000원*6명	= 1,800	
			<b>소 계</b>	<b>= 1,800</b>	
		운영비	- 여비 50,000원 * 6명*4월	= 1,200	
			- 수용비 및 수수료 400,000원*4월	= 1,600	
			- 공공요금 500,000원*4월	= 2,000	
			- 제세공과금(자동차세, 보험 등)	= 3,000	
			- 차량유지(연료)비 500,000원*4월	= 2,000	
			<b>소 계</b>	<b>= 9,800</b>	
사업비	- 생계비(간식 및 식사지원) 3,000원*1,374명*3월	= 12,366			
	- 이동상담, 아웃리치 사업	= 23,500			
	<b>소 계</b>	<b>= 35,866</b>			
<b>총 계</b>			<b>165,329</b>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월 : 추진계획 수립
- 2018.11월 :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차량구입비 예산반영(시비 180,000천원)
- 2019.03월 : 2019년 청소년 쉼터 운영비 국비신청
- 2019.05월 : 이동형 일시쉼터 차량발주
- 2019.05월 : 국도비 보조금(운영비) 내시
- 2019.09월 : 운영비 추경예산 반영, 청소년이동 쉼터 개소 준비(설치등록), 차량납품 및 리모델링
- 2019.10월 ~ 12월 : 청소년이동 쉼터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김순애	담당자	행정7급 김지연	전화	2595
-----	-------	------------	-----	----------	----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P - 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2019. 12월      ○ 위    치 : 김포대로 2110-30 통진청소년문화의집
- 사업규모 : 공기청정기 2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들의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760			1,760	
국 비		1,056			1,056	
도 비						
시 비		704			70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에 따른 지원 예산 편성(신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1,76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지원 : 880,000원*2대 =	1,7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월 : 추경예산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
- 2019.09월 ~ 12월 : 공기청정기 계약(구매) 및 방과후아카데미 보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년정책팀장 김순애	담당자	복지9급 김원태	전화	2596
-----	-------	------------	-----	----------	----	------

#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P - 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548	21,027	16,708	-59	4,378	5,479
국 비						
도 비						
시 비	15,548	21,027	16,708	-59	4,378	5,47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 운영에 따른 운영 부담금 편성

-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 2018. 9월말기준 김포-부천 아동인구수에 따른 부담금 반영(김포 89,992명 39.64%, 부천 137,019명 60.36%)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시군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21,027,000원 X 1개소 = 21,02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사업추진
- 2019.05 : 부천시 부담금 지급
- 2019.10 : 예산확정 후 증액부담금 부천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아동인구수 대비 부담금 지급(74,552명, 2016.6월말 기준)	
2018년	아동인구수 대비 부담금 지급(83,838명, 2017.8월말 기준)	
2019년	아동인구수 대비 부담금 지급(89,992명, 2018.9월말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647	6,647	-	-	
2018년	15,548	15,548	-	-	
2019년	16,649	16,649	-	-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P - 9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363	9,198	7,351	-26	1,873	2,835	
국 비							
도 비							
시 비	6,363	9,198	7,351	-26	1,873	2,83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명 증원(19명→21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제45조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통합 운영에 따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담금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임.(2018년 신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군 부담금 : 9,198,000원 * 1개소 = 9,19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사업추진
- 2019.05 : 부천시 부담금 지급
- 2019.10 : 예산확정 후 증액부담금 부천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19명	
2019년	19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6,363	6,363	-	-	
2019년	7,325	7,325	-	-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아동수당 지급) (P - 10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0,98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165,250	37,180,236	29,307,600	6,548,123	1,324,513	26,014,986	
국 비	7,377,564	25,950,363	20,280,859	4,721,879	947,625	18,572,799	
도 비	955,368	3,346,222	2,637,684	589,331	119,207	2,390,854	
시 비	2,282,268	7,883,651	6,389,057	1,236,913	257,681	5,601,38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기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6세 미만이었으나,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른 사업량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내에 사업규모 29,880명(국도비 내시인원)으로 금액 편성하였으나, 2019년 9월 지급대상 31,000여명으로 김포시 아동 증가율과 연령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00,000원 X 30,984명 x 12개월 = 37,180,236천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2019. 12. :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27,688명 지급	2018년 신규사업
2019년	28,869명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1,165,250	11,036,950	-	128,300	
2019년	35,855,723	17,559,000	-	18,296,723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이명원	전화	5530
-----	-------	----------	-----	----------	----	------

# (결식아동급식비(토·일·공휴일)) (P - 10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0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동 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5,918	80,732	80,732	0	4,814	
국 비						
도 비	75,918	80,732	80,732	0	4,814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예산 변경사항임.

구분	사업과목			예산 총계	예산액	비 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결식아동급식비 (토·일·공휴일)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11)	80,732	51,832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비 (토·일·공휴일)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01)		28,900	G-드림카드
↓						
구분	사업과목			예산 총계	예산액	비 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후	결식아동급식비 (토·일·공휴일)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사업보조 (11)	80,732	34,320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비 (토·일·공휴일)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01)		46,412	G-드림카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
근거내용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의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결식아동급식비(토·일·공휴일)예산을 통계목 분리(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편성 관련, 지역아동센터 공휴일 운영개소(6개소->5개소)로 축소 운영에 따른 예산 감액
- G-드림카드 공휴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 80,732	
결식아동급식비 (토·일·공휴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토 요 일 : 6,000원*110명*52식 = 34,320	예산변경
결식아동급식비 (토·일·공휴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토요일 및 공휴일 : 6,000원*96명*80식 = 46,412	예산변경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0. : 계획수립 및 집행
  - 2019. 12. : 보조금 정산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196명 지원	
2018년	196명 지원	
2019년	206명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83,918	65,719	-	18,199	
2018년	75,918	20,021	-	55,897	
2019년	80,732	40,984	-	39,748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차지인	전화	5593
-----	-------	----------	-----	----------	----	------

# (퇴소아동 자립지원) (P - 1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설 입소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퇴소 또는 위탁 종결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자립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0,000	75,000	65,000		10,000	-5,000	
국 비							
도 비	8,000	7,500	6,500		1,000	-500	
시 비	72,000	67,500	58,500		9,000	-4,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근거내용	시설입소아동의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종결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시설입소아동의 시설 퇴소 시 및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종결 시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내용 : 학자금, 주거 교육비 등 자립정착금 5,000,000원씩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퇴소아동 자립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립정착금 : 5,000,000원 X 15명 = 7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2019. 12.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 종결 시 지원(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10명 지급	
2018년	13명 지급	
2019년	11명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5,000	50,000	-	15,000	
2018년	80,000	65,000	-	15,000	
2019년	65,000	55,000	-	10,0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사회복지9급 한정이	전화	5426
-----	-------	----------	-----	------------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P - 10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만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9,400		35,100	24,300	59,400
국 비		41,580		24,570	17,010	41,580
도 비		2,673		1,579	1,094	2,673
시 비		15,147		8,951	6,196	15,14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201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 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 지급내용 : 자립수당 월 300,000원 현금 지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립수당 : 300,000원 X 22명 X 9개월 = 59,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 ~ 2019.04.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및 신청자 접수
- 2019.04. ~ 2019.12.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22명 신청 및 지급	201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5,100	18,000	-	17,1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사회복지9급 한정이	전화	5426
-----	-------	----------	-----	------------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P - 10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4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및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57,400	255,600	252,000	3,600	-1,800	
국 비	180,180	178,920	176,400	2,520	-1,260	
도 비	11,583	11,502	11,340	162	-81	
시 비	65,637	65,178	64,260	918	-45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규 신청자 및 전입자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근거내용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16세 미만의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 지급내용 : 양육수당 150,000원 만16세 도래 시까지 매월 지급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장적수혜금	150,000원 × 142명 × 12월 = 255,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2019. 1. ~ 2019. 1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135명 지급	
2018년	140명 지급	
2019년	142명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25,000	223,950	-	1,050	
2018년	257,400	255,000	-	2,400	
2019년	252,000	128,250	-	123,75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사회복지9급 한정이	전화	5426
-----	-------	----------	-----	------------	----	------

# (입양비용 지원) (P - 10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양에 따르는 비용 지원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21,600</b>	<b>10,800</b>	<b>16,200</b>		<b>-5,400</b>	<b>-10,800</b>	
국 비	15,120	7,560	11,340		-3,780	-7,560	
도 비	972	486	729		-243	-486	
시 비	5,508	2,754	4,131		-1,377	-2,75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의 타시군 예산 부족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근거내용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 알선 비용 등 지원

- 지급내용 : 입양알선비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입양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입양알선비용 : 2,700,000원 × 4명 = 10,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2019. 1. ~ 2019. 12. 입양비용 지급 (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4명 지급	
2018년	7명 지급	
2019년	3명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0,147	10,147	-	-	
2018년	21,600	19,553	-	2,047	
2019년	16,200	8,100	-	8,1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사회복지9급 한정미	전화	5426
-----	-------	----------	-----	------------	----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P - 10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정원 44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건전한 성장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b>계</b>	<b>1,018,940</b>	<b>1,116,967</b>	<b>1,086,661</b>	<b>-21,501</b>	<b>51,807</b>	<b>98,027</b>	
국 비	509,470	558,484	543,330	-10,750	25,904	49,014	
도 비	76,421	83,773	81,500	-1,613	3,886	7,352	
시 비	433,049	474,710	461,831	-9,138	22,017	41,66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시설 정원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및 2019년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프로그램비)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95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시설 종사자 및 정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시설별 월 4,580천원 ~ 6,70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운영비	·(도시)19인이하 : 4,580,000원×5개소×12월 ·(읍면)19인이하 : 4,730,000원×7개소×12월 ·(도시)29인이하 : 4,840,000원×3개소×12월 ·(읍면)29인이하 : 4,990,000원×3개소×12월 ·30인이상 : 6,700,000원×1개소×12월	=	1,116,967
		운영비 추가 지원 (프로그램비)	·(도시)19인이하 : 259원×5개소×5월 ·(읍면)19인이하 : 267원×7개소×5월 ·(도시)29인이하 : 272원×3개소×5월 ·(읍면)29인이하 : 280원×3개소×5월 ·30인이상 : 430원×1개소×5월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1. ~ 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19. 01. ~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읍면 30인 이상 1개소 읍면 29인 이하 2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5개소	
2018년	읍면 30인 이상 0개소 읍면 29인 이하 3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7개소 도시 19인 이하 5개소	
2019년	읍면 30인 이상 1개소 읍면 29인 이하 3개소 도시 29인 이하 3개소 읍면 19인 이하 7개소 도시 19인 이하 5개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952,656	950,150	-	2,506	
2018년	1,018,940	1,004,938	-	14,002	
2019년	1,065,160	781,520	-	283,64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특수목적형 지원(지역아동센터)) (P - 10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3,848	36,540	43,848		-7,308	
국 비	21,924	18,270	21,924		-3,654	
도 비	3,289	2,741	3,289		-548	
시 비	18,635	15,529	18,635		-3,10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특수목적형 운영 시설 감소(6개소→5개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95조 제1호
근거내용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다문화, 야간운영 등) 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으로 대상시설이 6개소→5개소로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특수목적형 지원 (지역아동센터)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비보조	·특수목적형 운영비 : 609,000원×5개소×12월 = 36,5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매월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19.01~2019.12 : 매월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6개소 지원	
2018년	6개소 지원	
2019년	5개소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44,064	40,196	-	3,868	
2018년	43,848	43,848	-	-	
2019년	43,848	18,270	-	25,578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P - 10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돌봄도우미 배치를 통한 종사자 업무경감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17,056	238,716	251,280		-12,564	21,660	
국 비							
도 비	108,528	119,358	125,640		-6,282	10,830	
시 비	108,528	119,358	125,640		-6,282	10,83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에 따른 예산액 조정(20명→19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95조 제1호
근거내용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학습지도 및 멘토 역할을 하는 도우미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 보조금 : 1,047,000원×19명×12월 = 238,71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매월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19.01~2019.12 : 매월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18개소 지원	
2018년	19개소 지원	
2019년	19개소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95,264	181,742	-	13,522	
2018년	217,056	205,270	-	11,786	
2019년	251,280	119,358	-	131,922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P - 10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효과적 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9,289	11,160		-1,871	9,289	
국 비							
도 비		2,787	3,348		-561	2,787	
시 비		6,502	7,812		-1,310	6,50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안심톡) 계약 확정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용 및 유지관리비 조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95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의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안전과 효율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지급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안심톡)구축 완료 시 김포시 자체사업은 종료 예정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문자알림 서비스 구축비용 : 385,400원×20개소 =	7,708
	201-02 공공운영비	·문자알림 유지비 : 26,348원×20개소×3월 =	1,58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 :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시스템 구축 관련 도-시군 협정체결
- 2019.07 : 경기도 계약업체 선정
- 2019.11 : 시스템 구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P - 10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시스템(출결관리시스템) 문자서비스 이용료 지급을 통한 이용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000	3,000	0	2,500	500	0
국 비						
도 비						0
시 비	3,000	3,000	0	2,500	500	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8년까지 김포시 자체사업비로 운영하였으나 경기도 전체 사업시행 지원에 따른 시비 증액 편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95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안전과 효율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지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 250,000원×12월 =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매월 유지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관내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시스템 문자 이용료 지급	
2018년	관내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시스템 문자 이용료 지급	
2019년	관내 지역아동센터 통합관리시스템 문자 이용료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000	2,314	-	666	
2018년	3,000	2,413	-	587	
2019년	2,500	1,346	-	1,154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이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지역아동센터))(P-10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3,400	23,800	22,800		1,000	400
국 비						
도 비	23,400	23,800	22,800		1,000	4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증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23,800	
이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지역아동센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처우개선비: 50,000원*39명*12월+50,000*1명*8월 = 23,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1. ~ 2019. 12. :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지원인원: 39명	
2018년	지원인원: 37명	
2019년	지원인원: 39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2,800	22,108	-	692	
2018년	23,400	18,750	-	4,650	
2019년	22,800	11,650	-	11,15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592
-----	-------	----------	-----	----------	----	------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P - 10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개소 / 은빛마을, 소풍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220			6,220	6,220	
국 비		4,354			4,354	4,354	
도 비		280			280	280	
시 비		1,586			1,586	1,58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관내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사업 신청에 따른 예산 편성(신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근거내용	<p><b>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li> <li>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li> <li>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li> <li>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li> <li>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동생활가정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 개인별 상담을 통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6,220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 선별비용 : 300,000원*3명*1회 = 900 ·아동 사례관리비 : 35,000원*4명*38회 = 5,3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경계선지능아동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 2019. 12 : 정산 보고 및 확인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차지인	전화	5593
-----	-------	----------	-----	----------	----	------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P - 10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00			1,500	1,500	
국 비		750			750	750	
도 비		113			113	113	
시 비		637			637	63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공동생활가정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에 따른 3개소 지원 예산 편성(신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제59조에 의거,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미세먼지 사태 지속으로 위협받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1,5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지원 : 500,000원*3개소*1회 =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0 ~ : 공동생활가정 공기청정기 구입 및 지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아동팀장 장영신	담당자	행정9급 차지인	전화	5593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노인장애인과





##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P - 10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5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후생복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34,600	319,600	214,200		85,000	
국 비						
도 비						
시 비	234,600	319,600	214,200		8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8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확대되어 최초 사업량 대비 약400명이 증가(1,050명→1,450명)하여 2019.6월 기준 예산 집행율이 65%이므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
근거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호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이발 및 목욕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7,000원×1,550명×4월 = 105,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매월 20일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급
- 2019년 6월분까지 총 7,913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총 지급인원 : 10,617명(월 885명)	
2018년	· 총 지급인원 : 11,294명(월 941명)	
2019년	· 총 지급인원 : 7,913명(월 1,318명)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14,200	181,611		32,589	
2018년	234,600	195,007		39,593	
2019년	214,200	139,366		74,834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9급 차효정	전화	2628
-----	--------	------------	-----	----------	----	------

##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P - 10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외 1개소
- 사업규모 : 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로식당 무료급식 취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무료급식 수준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9,880	35,900	29,880		6,020		
국 비							
도 비	2,988	3,590	2,988		602		
시 비	26,892	32,310	26,892		5,41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최저임금 상승으로 현장에서 부족한 인건비 현실화 요구에 따라 개선
- 취사원 인건비를 정액지원(830천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지원함으로써 노인 무료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6월부터 최저인건비(시급 8,350원)수준으로 인상지원

시간	기준	조정	인상액	비고
3시간	830,000원	830,000원	0	
3.5시간~4시간		1,030,000원	200,000원	
4.5시간~5시간		1,290,000원	46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총 계 = 6,020,000 · 200,000원 × 2명(4시간 근로자) × 7월 = 2,800,000 · 460,000원 × 1명(5시간이상 근로자) × 7월 = 3,2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분기별 지급
- 2019.6월 급여부터 최저인건비(시급8,350원) 수준으로 인상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취사원 3명에게 700,000원의 인건비 지급	
2018년	· 취사원 3명에게 830,000원의 인건비 지급	
2019년	· 취사원 2명에게 830,000원의 인건비 지급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5,200	25,200		0	
2018년	29,880	28,562		1,318	
2019년	29,880	9,960		19,92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9급 차효정	전화	2628
-----	--------	------------	-----	----------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P - 10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노인복지센터 외 9개소
- 사업규모 : 대상자 16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b>계</b>	<b>276,458</b>	<b>540,000</b>	<b>328,119</b>		<b>211,881</b>	<b>263,542</b>
국 비	193,530	239,123	229,680		9,443	45,593
도 비	12,439	15,260	14,765		495	2,821
시 비	70,489	285,617	83,674		201,943	215,12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최초 사업량 대비 서비스 대상자가 약 37명이 증가(108명→145명)하여 2019.6월 기준 예산 집행율이 82%이므로 추가예산 확보 필요, 2019년 12월 말 기준 165명으로 증가 예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기요양등급의 A,B 판정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에게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진
-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321,030원×165명×4월 = 211,88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사업추진
  - 2019.12 ~ 2020.01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대상자 9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18년	· 대상자 11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19년	· 대상자 145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73,129	162,098		111,031	
2018년	252,058	252,058		0	
2019년	328,119	269,325		58,794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조승희	전화	2207
-----	--------	------------	-----	----------	----	------

#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P - 1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노인복지센터 외 9개소
- 사업규모 : 대상자 1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중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 제약시 단기간 일상생활 지원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181	7,153	3,153		4,000	3,972
국 비	2,228	2,701	2,200		501	473
도 비	143	175	142		33	32
시 비	810	4,277	811		3,466	3,46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최초 사업량 대비 서비스 대상자가 약 4명이 증가(6명→10명)하여 2019.6월 기준 예산이 전액 소진 되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2019년 12월말 기준 15명으로 증가 예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중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에게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업비	· 111,110원×9명×4월 =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사업추진
  - 2019.12 ~ 2020.01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대상자 9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18년	· 대상자 6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2019년	· 대상자 1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4,546	1,904		2,642	
2018년	3,181	1,971		1,210	
2019년	3,153	2,845		308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조승희	전화	2207
-----	--------	------------	-----	----------	----	------

## (경로당 운영지원(자체)) (P - 108)

###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2019.1 ~ 12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경로당 350개소 대표자 : 경로당 회장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로당별 회원수 및 면적에 따른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81,140	466,140		15,000	481,140
시 비		481,140	466,140		15,000	481,140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최초 사업량 대비 10개소(340개소→35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예산 확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4조(지원내용)
근거내용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4조(지원내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마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신규 등록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총 계 = 15,000 · 운영비: 200,000원×10개소×4월 = 8,000 · 난방비: 350,000원×10개소×2월 = 7,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경로당 340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9년	466,140	466,140		110,925	110,925		355,215	355,215		6.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조승희	전화	2207
-----	--------	------------	-----	----------	----	------

#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P - 1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경로당 35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로당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30,000	341,000	306,000		35,000	11,000
국 비						
도 비	30,690	30,600	30,600		0	-90
시 비	299,310	310,400	275,400		35,000	11,09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최초 사업량 대비 10개소(340개소 → 35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로당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07-0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100,000원×350개소×1월 = 3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사업추진
- 2019.12 ~ 2020.01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경로당 319개소에 대한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2018년	· 경로당 326개소에 대한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2019년	· 경로당 340개소에 대한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30,000	317,300		12,700	
2018년	330,000	321,800		8,200	
2019년	306,000	268,600		37,4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조승희	전화	2207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수행기관 4개소 전담인력 12인 상반기 보조금 지급
- 2019.06 : 수행기관 4개소 전담인력 12인 하반기 보조금 지급
- 2019.09 : 추가 전담인력 1인 선발 및 인건비 지급
- 2019.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수행기관 5개소 전담인력 10명에 인건비 140,712천원 지급	
2018년	· 수행기관 5개소 전담인력 10명에 인건비 187,306천원 지급	
2019년	· 수행기관 4개소 전담인력 12명에 인건비 272,376천원 지급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40,712	131,821		8,891	
2018년	187,306	185,234		2,072	
2019년	272,376	272,376		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김수경	전화	2206
-----	--------	------------	-----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P - 10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655,710	5,230,097	4,869,253	-157,643	518,487	1,574,387	
국 비	1,827,855	2,615,048	2,434,627	-78,822	259,243	787,193	
도 비	274,179	392,258	365,195	-11,823	38,886	118,079	
시 비	1,553,676	2,222,791	2,069,431	-66,998	220,358	669,115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신규 일자리 100명, 기간연장 709명 계획에 따른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대기자를 고려한 신규일자리 확대와 기존 참여자에 대한 참여기간 연장을 통한 소득보전을 위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 총 계 = 518,487	
	301-11 기타보상금	· 기간연장: 285,000원×282명×2월 = 160,740	
	307-05 민간위탁금	· 공익형신규: 285,000원×100명×4월 = 114,000 · 기간연장 : 285,000원×427명×2월 = 243,74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03 : 참여자 선발, 발대식 개최 및 참여자 활동시작
- 2019.04 ~ 08 : 민간위탁금 보조금 교부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
- 2019.09 ~ 12 : 신규일자리 선발 및 활동기간연장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지역사회환경개선 외 30개 사업에 2,799,190천원 지원, 1,297명 참여	
2018년	· 지역사회환경개선 외 33개 사업에 3,655,710천원 지원, 1,500명 참여	
2019년	· 지역사회환경개선 외 38개 사업에 4,387,997천원 지원, 1,676명 참여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799,190	2,749,072		50,118	
2018년	3,655,710	3,609,659		46,051	
2019년	4,711,610	4,387,997		323,613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김수경	전화	2206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시장형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 총 계 = 7,25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참여자·직원 성과금: 120,000원×30명 = 3,600 · 원재료(콩)구입: 1,000,000원×1회 = 1,000 · 사업단평가회의 진행비 : 750,000원×1회 = 750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장비구입(CCTV,소독기,에어컨): 1,900,000원×1회 = 1,9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인센티브 지급
- 2019.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시장형사업단 5개(김포할매두부,김포금쌀과자,김포원조할매참기름,스쿨존교통지원,학교급식도우미) 190명 노인일자리 창출 · 시장형 우수기관 1등급 선정	
2018년	· 시장형사업단 5개(김포할매두부,김포금쌀과자,김포원조할매참기름,스쿨존교통지원,학교급식도우미) 190명 노인일자리 창출 · 시장형 우수기관 1등급 선정	
2019년	· 시장형사업단 6개(김포할매두부,김포금쌀과자,김포원조할매참기름,스쿨존교통지원,학교급식도우미, 시니어서비스맨) 224명 노인일자리 창출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1,400	11,400		0	
2018년	10,600	10,600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김수경	전화	2206
-----	--------	------------	-----	----------	----	------

# (실버인력뱅크 지원) (P - 11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 12. ○ 위 치 : 사우중로 74번길 48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 지원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b>계</b>	<b>72,111</b>	<b>76,360</b>	<b>67,300</b>		<b>9,060</b>	<b>4,249</b>
국 비						
도 비	20,190	20,190	20,190			
시 비	51,921	56,170	47,110		9,060	4,24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2인 인건비 부족분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익형·사회서비스형·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2인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실버인력뱅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총 계	= 9,060
		· 급 여 : 2,288,300원×1명(6호봉)×1월	= 2,288
		1,967,900원×1명(4호봉)×1월	= 1,968
		· 명 절 비 : 1,372,980원×1명×1회	= 1,373
		· 가족수당 : 20,000원×1명×12월	= 240
		· 초과수당 : 15,993원×1명×5시간×5월(5호봉)	= 400
		16,639원×1명×5시간×7월(6호봉)	= 582
		14,339원×1명×5시간×12월(4호봉)	= 860
		· 퇴직적립금 : 311,320원×2명×1월	= 623
		· 4대보험료 : 362,825원×2명×1월	= 72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12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집행
- 2019.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실버인력뱅크 운영비(인건비,운영비) 68,900천원 지원 인력과견형사업 외 6개 사업에 292명 참여	
2018년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실버인력뱅크 운영비(인건비,운영비) 72,111천원 지원, 인력과견형사업 외 8개 사업에 317명 참여	
2019년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실버인력뱅크 운영비(인건비,운영비) 67,300천원 지원, 인력과견형사업 외 10개 사업에 326명 참여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8,900	68,074		826	
2018년	72,111	71,740		371	
2019년	67,300	67,300		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김수경	전화	2206
-----	--------	------------	-----	----------	----	------

#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11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노인복지센터
- 사업규모 : 1개소(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800	3,000	1,800		1,200	
국 비						
도 비	1,800	3,000	1,800		1,200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도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내용 변경(재가관리사 2명 추가 채용)으로 지급 대상 2명 추가에 따른 수당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시설운영비로서 시설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에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계목 변경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원 × 2명 × 12월(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 종사자) = 1,200	통계목 변경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05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3명(50,000원/1명)에 지급(750천원)
- 2019.06 ~ 1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5명(50,000원/1명)에 지급(1,750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50,000원 × 3명 × 12월 = 1,800,000원 지급	
2018년	· 50,000원 × 3명 × 12월 = 1,750,000원 지급	2018.05.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1명 감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
2019년	· 2019. 01.~05. 50,000원 × 3명 × 5월 = 750,000원 지급 · 2019. 06.월 50,000원 × 5명 × 1월 = 250,000원 지급	2019.06.월 종사자 2명 채용에 따른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800	1,800		0	
2018년	1,800	1,750		50	지급 대상 감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
2019년	1,800	1,000		80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오은화	담당자	사회9급 김성진	전화	2630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9 ~ 12 : 사업집행
- 2019.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참고(부대경비 집행가능항목)

수행기관	집행 가능 항목
운영비 미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전담인력 연차수당,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회의비, 피복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교육비, 교육참가비, 기관차량 유류비, 홍보비, 공공요금
인력파견형사업 수행기관	회의비, 교육비, 문화활동비, 전담인력 연차수당, 출장비, 비품구입비, 교육참가비, 전화요금, 상해보험료, 사업진행비, 기관차량 유류비, 인센티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김수경	전화	2206
-----	--------	------------	-----	----------	----	------

## (화장장려금 지원)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전년도 대비 신청건수 및 지급액 증가율 적용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76,000	310,700	290,700		20,000	34,700
국 비						
도 비						
시 비	276,000	310,700	290,700		20,000	34,7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6월말 기준 화장 장려금 신청건수가 2018년 동월 대비하여 455명→512명으로 총57명(13%)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증액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등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화장 수요를 충족하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 김포시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관외 화장시설 이용시 높은 이용요금 적용으로 이용료 부담이 큰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화장장려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276,000,000원(2018년 예산액)×7% (증가율 총13%에서 2018년 대비 5%증가율 제외)	= 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4.10.31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2015. 01. 01. 시행)
- 2018.01.01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기준일
- 2019.06.26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 2019.07. : 2019년 2차 추가예산 편성(전년도 대비 예산증가분)
- 2020.01.01 : 조례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예산액 : 276,000천원, 신청건수 : 912건, 집행액 : 270,200천원, 집행률 : 98%	
2019년	· 예산액 : 290,700천원, 신청건수 : 512건, 집행액 : 151,600천원, 집행률 : 52.2%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276,000	270,200		5,800	
2019년	290,700	151,600		139,10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오은화	담당자	시설9급 이영미	전화	2216
-----	--------	------------	-----	----------	----	------

# (공설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12. ○ 위 치 : 김포한강4로 419-39
- 사업규모 : 배수로 확장공사 1식/ 계단 난간설치 1식/ 내부 환경개선공사 및 지하2층 안치단 800기 추가설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설봉안당(무지개 뜨는 언덕)노후화 진행으로 인한 보수공사가 요구되는바, 안치단 추가설치 및 내부 환경개선공사 통하여 건물 내구성을 강화코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00,000			4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400,000			4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공설봉안당 환경개선공사(5중방수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누수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발생 배수로확장공사, 내부벽체 도장공사, 계단 난간공사, 로비환경개선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제130조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공설봉안당 현관 로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칙칙하여 밝고 산뜻한 분위기로 내부 환경 개선공사가 필요하고, 계단 난간높이가 다소 낮아 난간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지하2층 안치단(개인단, 부부단) 미설치 부분 추가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배수로(U형측구)가 기존사이즈 250×250으로 우수대비 빗물을 받기에 크기가 좁아 전반적인 배수로 확장공사가 필요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 총계 = 400,000	
김포시 공설봉안당 환경개선공사	401-01 시설비	· 설계비 : 20,000,000원×1식 = 20,000 · 총 공사비 : 230,000,000원 = 230,000 - 배수로확장공사 : 6,000,000원(재료비)+8,000,000원(노무비)+2,000,000원(경비)=16,000,000원 - 가설공사×1식=4,000,000원(재료비) - 난간공사 : 6,000,000원(재료비)+6,000,000(노무비)=12,000,000원 - 로비내부인테리어공사×1식=178,000,000원 - 도장공사 : 8,000,000원(재료비)+10,000,000원(노무비)+2,000,000원(경비)=20,000,000원	
공설봉안당 지하2층 안치단 추가설치	401-01 시설비	· 개인단 : 106,000원×512기 = 54,272 · 부부단 : 155,000원×288기 = 44,640 · 무연고실 : 51,080×1식 = 51,088 (유골보관함, 진공기 등)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0,000			40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보상비							
	공사비		380,000			38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9. : 설계용역 발주 및 준공
- 2019. 10.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9. 12. : 공사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오은화	담당자	시설9급 이영미	전화	2216
-----	--------	------------	-----	----------	----	------

#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지원) (P - 111)

##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2019.1 ~ 12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시장장애인단체연합회 대표자 : 장준초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여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90,760	323,024	297,294	25,730	32,264	
시 비	290,760	323,024	297,294	25,730	32,264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10.8%)로 인한 인건비 부족
- 장애인단체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추가 지원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3조 2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인건비(최저임금)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0.8%) 등으로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할 수 없어 일부 증액
- 장애인단체와 상반기는 일일8시간, 하반기에는 일일7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 합의(19년 7월)
- 시각, 청각, 지적 등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합동결혼식, 장학사업, 정보화경진대회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총 계	25,730	25,730	
장애인 단체 연합회 운영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 시 : 연중</li> <li>장 소 : 장애인단체사무실(결포동)</li> <li>참여인원 : 11명</li> <li>지원단체 : 김포시장예인단체연합회</li> <li>사업내용 : 단체별 사무원 인건비 지원</li> <li>산출근거 : 1,805,000원 × 11명 × 1.29월</li> </ul>	25,730	25,73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보조사업자 : 장애인단체연합회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사무원 10명 인건비 및 장애인단체 11개소 운영비 지원)	
2018년	○ 보조사업자 : 장애인단체연합회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사무원 10명 인건비 및 장애인단체 11개소 운영비 지원)	
2019년	○ 보조사업자 : 장애인단체연합회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사무원 11명 인건비 및 장애인단체 11개소 운영비 지원)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7년	287,760	287,760		279,242	279,242		8,518	8,518		
2018년	290,760	290,760		287,603	287,603		3,157	3,157		
2019년	297,294	297,294		167,801	167,801		129,493	129,493		6.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3
-----	--------	-------------	-----	----------	----	------

#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P - 111)

##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2019. 1. ~ 12.
- 공모여부 : 공모(보건복지부)
- 보조사업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 대표자 : 이경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축·증축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필요 시 상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올바른 설치와 이용자의 접근권 등을 보장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4,560	36,158	35,381	0	777	1,598	
시 비	34,560	36,158	35,381	0	777	1,598	
자부담	0	0	0	0	0	0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근거내용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2019년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2019년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급
-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에 따라 운영경비 전액지원 가능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총 계				
			777	777		
장애인편의시설기 술지원센터 운영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 인건비(기술팀장) 5호봉 : 53,600원 × 9월 · 인건비(기술팀장) 6호봉 : 43,500원 × 3월 · 제수당(가족수당) : 20,000원 × 2월 · 제수당(효도휴가비) : 53,600원 × 2회 × 60% · 퇴직금 : 677,220원 ÷ 12월	482 130 40 65 60	482 130 40 65 6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 추진실적					
	도면검토	현장점검	실태조사	내방,전화 등	계	
	725	633	75	489	1,922	
2018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주기:5년)
	○ 추진실적					
	도면검토	현장점검	실태조사	내방,전화 등	계	
	668	546	915 (전수조사 포함)	426	2,555	
2019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6월30일 기준
	○ 추진실적					
	도면검토	현장점검	실태조사	내방,전화 등	계	
	341	437	26	344	1,148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7년	25,703	25,703	0	25,703	25,703	0	0	0	0	
2018년	34,560	34,560	0	34,560	34,560	0	0	0	0	
2019년	35,381	35,381	0	18,150	18,150	0	17,231	17,231	0	6.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박세준	전화	2212
-----	--------	-------------	-----	----------	----	------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위 치 : 국민연금김포강화지사
- 사업규모 : 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활동지원을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8,400	6,240	5,760		480	-2,160
국 비						
도 비						
시 비	8,400	6,240	5,760		480	-2,1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활동지원 적격심사 관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내용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활동지원 적격심사 관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심의 위원회수당	201-01 사무관리비	· 80,000원×6명×1회	= 4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사업 집행 및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수급자격위원회 위원: 6명	
2018년	· 수급자격위원회 위원: 6명	
2019년	· 수급자격위원회 위원: 6명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860	5,870		990	
2018년	8,400	7,320		1,080	
2019년	5,760	3,280		2,48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선애	전화	2629
-----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4,100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e그린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 처리시간 단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8,160	23,660	14,000	0	9,660	5,500	
국 비							
도 비							
시 비	18,160	23,660	14,000	0	9,660	5,5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의 우편물 발송시스템 도입(2019년 8월)으로 자체 우편 발송량 증가 (기존) 사전통지서만 발송 → (변경) 본부과, 독촉, 체납 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압류장 추가 발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근거내용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등 발송
- 우편물 발송시스템 도입을 통해 월 평균 700여 건의 우편물을 수기 제작하지 않고 김포우체국 e그린우편(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대행)을 통해 제작 및 발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201-02 공공운영비	· 등기우편 : 2,100원 × 4,600통 = 9,6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사업집행(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 등 발송)
- 2019.09 ~ 10 : 결과 평가 및 차년도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등기우편 3,281건, 일반우편 700건	
2018년	· 등기우편 4,757건, 일반우편 1,343건	
2019년	· 등기우편 3,670건, 일반우편 550건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8,000	6,407		1,593	
2018년	18,160	12,033		6,127	
2019년	14,000	7,962		6,038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박세준	전화	2212
-----	--------	-------------	-----	----------	----	------

# (장애인복지 관련위원회 운영) (P - 11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사례회의 및 장애인복지일자리 위탁 관련 위원회 등 전문가 참여를 도모하므로 장애인복지 운영에 전문성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240	3,640			-1,600	
국 비						
도 비						
시 비	5,240	3,640			-1,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7월 1일자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전담민관 협의체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일자리,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위원회 등 참석수당 지급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7
근거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전문적인 사례회의 및 위원회를 위한 직능별 전문가를 참여 위원으로 선정
-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위원 참석수당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복지 관련위원회 운영		· 총계 = 3,640	
	201-01 사무관리비	·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80,000원 × 11명 × 1회 = 880 ·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위원회 80,000원 × 7명 × 1회 = 560 · 장애인 복지신문 선정위원회 80,000원 × 7명 × 1회 = 560 ·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위원회 80,000원 × 5명 × 2회 = 800 · 장애인민관협의체 참석수당 20,000원 × 15명 × 2회 = 600	
	301-09 행사실비보상금	· 장애인민관협의체 실비보상금 80,000원 × 15명 × 2회 = 2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6 ~ 12 : 「김포시장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9.09 ~ 12 : 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장애인복지 관련위원회 5회 개최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240	1,700		3,54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윤정	전화	2218
-----	--------	-------------	-----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보경장애인보호작업장(통진읍 절골로 127번길 32-44), 행복누리(봉화로 172), 삼보보호작업장(월곶면 용강로 383-1)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0,888	725,630	253,100		472,530	664,742	
국 비	30,444	362,815	126,550		236,265	332,371	
도 비	30,444	362,815	126,550		236,265	332,371	
시 비							
기 타					90,019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행복누리, 삼보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 선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행복누리 - 시설 내 성형기계를 구비하여 생산 후 절단에서 소요되는 시간 절약 및 비누 표면과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프레스를 구비하여 비누가루 날림 현상을 방지하여 근로장애인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삼보보호작업장 - 사업장 증축으로 매출 증가 기대 및 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총계 = 472,530	자부담 별도 90,019
		· 비누성형기 : 8,800,000원×1대 = 8,800	행복누리
		· 비누세절기 : 22,000,000원×1대 = 22,000	
		· 비누압출기 : 26,950,000원×1대 = 26,950	
		· 건축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 433,234	삼보보호작업장
		· 전기공사 = 34,562	
· 통신공사 = 8,503			
· 기계소방공사 = 19,216			
· 전기소방공사 = 9,284	자부담 90,01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0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 2019.09 ~ 12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 및 결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밀알꿈씨 : 장비 기능보강 (116,050천원) · 에이블 쿠키 : 장비 보강 (7,200천원) / 시설 개보수 (42,792천원) · 행복누리 : 스킨팩 포장기 (8,195천원), 정제수기 (7,040천원) - 자부담1,524천원 · 보경보호작업장 : 세탁장비 (67,342천원)	
2018년	· 밀알꿈씨 : 장비보강 (60,888천원)	
2019년	· 보경보호작업장 : 세탁장비(253,100천원)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47,095	247,095		0	
2018년	60,888	60,888		0	
2019년	253,100	253,100		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8급 김효신	전화	2211
-----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가연마을(월곶면 용강로37번길 76-25), 예지원(월곶면 용강로 377), 통진프란치스코집(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거주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88,860	98,978	52,000		46,978	-89,882
국 비	94,430	49,489	26,000		23,489	-44,941
도 비	94,430	49,489	26,000		23,489	-44,941
시 비						
기 타					1,332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기능보강 사업 선정  
(통진프란치스코집-화장실 개보수 사업, 예지원-노후 온수보일러 및 제어장치 교체공사)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후건물의 취약점인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 해소
- 화장실의 하수관 및 환기시설 보수를 통해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
-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수보일러 및 제어기계를 교체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위생관리 및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총계 = 46,978	자부담 별도 1,332
		<통진프란치스꼬집> · 화장실 배기창설비 1,320,000원×1개소 = 1,320 · 칸막이 설비 1,100,000원×2개소 = 2,200 · 구조변경(변기교체) 9,790,000원×1개소 = 9,790	자부담 1,332
		<예지원> · 보일러교체 20,000,000원×1개소 = 20,000 · 제어장치교체 15,000,000원×1개소 = 1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09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 2019.09 ~ 12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 및 결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예 지원 : 옥상방수 및 창틀방수 공사 (18,420천원)	
2018년	· 가연마을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포기 (188,860천원)	
2019년	· 예 지원 : 배연장 설치 (25,000천원) · 가연마을 : 대피경로 확보 및 배연장 설치 (27,000천원)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8,420	18,420		0	
2018년	188,860	0		188,860	
2019년	52,000	52,000		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8급 김효신	전화	2211
-----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LED 교체지원))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가연마을(월곶면 용강로37번길 76-25), 예지원(월곶면 용강로 377), 통진프란치스꼬집(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에너지 효율이 낮은 조명 설비를 LED로 교체하여 효율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460	1,790		6,670	8,460	
국 비		4,230	895		3,335	4,230	
도 비		4,230	895		3,335	4,230	
시 비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가연마을, 예지원) 기능보강(LED 교체지원) 사업 선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조명 설비를 LED로 교체하여 효율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LED교체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총계 = 6,670 · 가연마을 : 5,000원×501㎡ = 2,505 · 예지원 : 5,000원×833㎡ = 4,16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09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LED 교체지원) 사업비 교부
- 2019.09 ~ 12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LED 교체지원) 집행 및 결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통진프란치스코집 사업비 집행 1,790천원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90	1,790		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8급 김효신	전화	2211
-----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P - 11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57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장애인 안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735,410	8,257,637	6,433,074	967,420	857,143	2,522,227	
국 비	4,013,787	5,780,346	4,503,151	677,195	600,000	1,766,559	
도 비	258,094	344,593	289,489	43,533	11,571	86,499	
시 비	1,463,529	2,132,698	1,640,434	246,692	245,572	669,169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7월 장애등급폐지로 인해 대상자 확대(기존 1~3급에서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변경)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9년 7월 장애등급폐지로 인해 대상자 확대(기존 1~3급에서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변경)
-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 3,500,000원 × 80명 × 3월 = 857,14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12 : 사업집행
- 2019.12 : 결과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이용자 : 410명	
2018년	· 이용자 : 499명	
2019년	· 이용자 : 577명	7.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964,119	3,964,119		0	
2018년	5,735,410	5,377,766		357,644	
2019년	7,400,494	6,701,000		699,494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선애	전화	2629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성립전)) (P - 1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4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도비로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49,119	1,266,391	549,119		717,272	717,272	
국 비							
도 비	109,823	253,277	109,823		143,454	143,454	
시 비	439,296	1,013,114	439,296		573,818	573,81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현재 대상자보다 적게 책정됨(본예산 사업량: 157명 / 현재 대상자: 341명)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 '19.7말부터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도비보조금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 -> 143,454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12,960원×341명×27시간×6월 = 717,27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12 : 사업집행
- 2019.12 : 결과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이용자: 145명	
2018년	· 이용자: 203명	
2019년	· 이용자: 341명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82,542	382,542		0	
2018년	549,119	549,119		0	
2019년	549,119	549,119		0	6.30.일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선애	전화	2629
-----	--------	-------------	-----	----------	----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P - 11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57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성장기 발달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아동의 지속적 치료에 기여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79,393	944,400	864,000	-21,600	102,000	165,007
국 비	545,575	661,080	604,800	-15,120	71,400	115,505
도 비	35,073	42,498	38,880	-972	4,590	7,425
시 비	198,745	240,822	220,320	-5,508	26,010	42,07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사업량 증가 및 대기자 발생(390명 → 578명)으로 인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9년 사업량 증가로 인해 많은 대기자 발생(390명 → 578명)
- 통계목 변경(공기관등에대한지본적위탁사업비[403-02]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정부지원금 평균값(180,000원)×188명×3월      =    10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12. : 사업집행
- 2019.12. : 결과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397명 / 발달재활 제공기관 : 19개소	
2018년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444명 / 발달재활 제공기관 : 22개소	
2019년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563명 / 발달재활 제공기관 : 29개소	6.30.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720,973	720,973		0	
2018년	779,393	729,393		50,000	
2019년	842,400	425,324		417,076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선애	전화	2629
-----	--------	-------------	-----	----------	----	------

#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P - 1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활동지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육아지원, 산모지원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0,000	26,250	35,000		-8,750	-43,750
국 비						
도 비	14,000	5,250	7,000		-1,750	-8,750
시 비	56,000	21,000	28,000		-7,000	-35,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활동지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신청이 많지 않아 감액 내시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감액 내시 반영 및 활동지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육아지원, 산모지원 등을 실시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10,000원×4명×48시간×12월 = 26,2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12 : 사업집행
- 2019.12 : 결과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이용자 : 없음	
2018년	· 이용자 : 3명	
2019년	· 이용자 : 1명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680	0		1,680	
2018년	70,000	5,396		64,604	
2019년	35,000	17,500		17,5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선애	전화	2629
-----	--------	-------------	-----	----------	----	------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P - 1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2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 진단에 필요한 진단비 및 검사비 등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680	3,240	2,680		560	560	
국 비	1,340	1,620	1,340		280	280	
도 비	201	243	201		42	42	
시 비	1,139	1,377	1,139		238	23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상반기 지급 금액이 약2,379천원으로 총예산의 88% 사용
- 하반기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3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 등록에 따른 적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단비·검사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을 어려워하는 대상에게 비용 지원을 통해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40,000원 × 14명  = 5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12 : 사업진행(진단비·검사비 지급 및 지급현황 모니터링)
- 2019.08 ~ 10 : 결과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신규 장애 등록 40건 / 장애 재판정 검사비 21건	
2018년	· 신규 장애 등록 37건 / 장애 재판정 검사비 19건	
2019년	· 신규 장애 등록 35건 / 장애 재판정 검사비 29건	6.30.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680	2,190		490	
2018년	2,680	1,577		1,103	
2019년	2,680	2,379		301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윤정	전화	2218
-----	--------	-------------	-----	----------	----	------

##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P - 11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받은 자의 언어·청능 기능의 향상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000	3,000			3,000	0
국 비						0
도 비	900	900			900	0
시 비	2,100	2,100			2,100	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8년도 사랑의 달팽이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받은 대상자 1명, 2019년 김포시 전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 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랑의 달팽이(아주대학교 병원 협약) 수술 지원 대상자를 수술 이후 3년 동안 치료비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3,000,000원×1명  =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사랑의 달팽이 주최 인공달팽이 수술 받은 대상자 1명 김포시 전입 예정
- 2018.2.19. : 경기도 보조금 내시 하달
- 2019.02.26. : 사랑의 달팽이 주최 인공달팽이 수술 받은 대상자 1명 김포시 전입
- 2019.03 ~ 현재 : 언어청능 재활치료 진행 중
- 2019.09 ~ 12 : 사업집행(추경 반영 후 재활치료 비용 소급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대상자 : 1명	
2018년	· 대상자 전출(1명)로 사업비 불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000	3,000		0	
2018년	3,000	0		3,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윤정	전화	2218
-----	--------	-------------	-----	----------	----	------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P - 1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000			6,000	6,000	
국 비							
도 비		6,000			6,000	6,000	
시 비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우리시 대상자 1명 2019년도 도비보조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확정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 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입원 수술비 및 향후 3년간 재활치료 비용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6,000,000원 × 1명  = 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1 ~ 2 : 2019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모집
- 2018.02.18.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김포시 1명 선정)
- 2019.04.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진행
- 2019.04.~ 현재 : 언어청능 재활치료 진행
- 2019.09 ~ 12 : 사업집행(추경 반영 후 수술비용 및 재활치료 비용 소급 지급 예정)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수술대상자 1명(수술비용 및 재활치료비 6,000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000	6,000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담당자	사회9급 황윤정	전화	2218
-----	--------	---------	-----	----------	----	------

#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P - 1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62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51,781			851,781	851,781	
국 비		596,247			596,247	596,247	
도 비		38,330			38,330	38,330	
시 비		217,204			217,204	217,204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교부되지 않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관련예산 미교부로, 2019년도 예산으로 지출 상계처리 후 부족 분 추가 내시 통보(2019.6.5.)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계 <span style="float: right;">851,781</span></li> <li>· 가산급여: 1,000원×16명×110시간×5월 = 8,800</li> <li>· 가산급여(야간): 1,500원×16명×30시간×5월 = 3,600</li> <li>· 활동지원 급여: 12,960원×620명×103시간×1월 = 829,381</li> <li>· 활동지원 급여(교통비): 5,000원×100명×20일×1월 = 10,000</li> </ul>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 ~ 12 : 사업집행
- 2019.12 : 결과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410명</li> <li>· 가산급여 이용자: 7명</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501명</li> <li>· 가산급여 이용자: 12명</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571명</li> <li>· 가산급여 이용자: 16명</li> </ul>	6.30.일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황선애	전화	2629
-----	--------	-------------	-----	----------	----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전 설치) (P - 1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 12.
- 위 치 : 중봉로 58번길 46, 109동 304호(감정동, 쌍용A)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11,960			311,960	311,960	
국 비							
도 비							
시 비		311,960			311,960	311,96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파트 매입(풍무동)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2019.07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단기(전·월세)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 불가피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전 설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총계	= 311,960
		· 아파트 매입비 1,638천원×189.22㎡×1개소	= 310,000
		· 중개보수비	= 1,400
		· 등기수수료	= 5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7 : 공유재산 심의(취득 및 무상사용 허가)
- 2019.09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아파트 매입
- 2020.01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8급 김효신	전화	2211
-----	--------	-------------	-----	----------	----	------

#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성립전)) (P - 11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편의시설 현황 DB 구축 및 통합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요원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를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사회생활에 편의 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762			14,762	14,762	
국 비							
도 비		4,429			4,429	4,429	성립전 예산
시 비		10,333			10,333	10,33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편의시설 현황 DB 구축 및 통합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요원 운영, 도 신규사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근거내용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편의시설 현황 DB 구축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요원을 운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불편함이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사회생활에 편의 증진 도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총계 = 14,762 · 인건비 : 1,745,150원 × 1명 × 5월 = 8,726 · 인건비 : 1,636,000원 × 1명 × 1월 = 1,636 · 운영비 : 400,000원 × 6월 = 2,400 · 사무용품 : 2,000,000원 × 1회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6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당 사업 확정내시서 및 계획서 송부
- 2019.06 : 현장조사요원 선발
- 2019.07 : 성립전 예산 요구
- 2019.07 ~ 12 : 운영비 교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9급 박세준	전화	2212
-----	--------	-------------	-----	----------	----	------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767,900	110,000	1,657,900			1,657,900	
공 정 별	설계비	58,293	58,293				
	보상비						
	공사비	1,657,900		1,657,900		1,657,900	
	감리비	51,707	51,707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7 :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계획수립
- 2018.09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18.10 :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설계비 및 감리비)
- 2019.0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0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건축허가 완료)
- 2019.10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2020.08 :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록	담당자	행정7급 장주동	전화	2213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여성가족과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우수부서 포상) (P - 11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9개부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 사업에 대한 부서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평등한 시정 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3,600	0	0	3,600	
국 비						
도 비						
시 비	0	3,600	0	0	3,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간의 협업 도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금 지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김포시 포상조례	제39조 제8조 제2항
근거내용	<p><b>제39조(여성친화도시)</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b>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사업 발굴 및 확산, 공유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과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금 지원
- 전부서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시상(9개 부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우수부서 포상	303-01 포상금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우수부서 포상 3,600,000원 * 1회 = 3,600	
		- 700,000원 × 1개 부서 - 500,000원 × 2개 부서 - 300,000원 × 3개 부서 = 2,600	실·과·소 (6개지표)
		- 500,000원 × 1개 부서 - 300,000원 × 1개 부서 - 200,000원 × 1개 부서 = 1,000	읍·면·동 (4개지표)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 : 2019년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 평가계획 수립
- 2019.04~10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2019.11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평가자료 취합
- 2019.12 :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평가 심사 및 시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행정7급 장영노	전화	5582
-----	-------	------------	-----	----------	----	------

# (한마음 사랑의 김장나누기)(P - 119)

## □ 지방보조사업 개요(사업비)

- 사업기간 : 2019.10월 ~ 11월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 : 유인숙
- 사업목적 :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김장나누기 사업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및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 기대효과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유대감 강화 및 지역사랑 실천으로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4,600	13,200	7,700	5,500	-1,400	
시 비	12,000	12,000	7,000	5,000	0	
자부담	2,600	1,200	700	500	-1,400	

## □ 예산 증감사유

-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급대상자 증가 및 재료비 증가로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근거내용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우리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이웃에게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을 모아 김장김치를 나눔으로써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합 계		13,200	12,000	1,200	
한마음 사랑의 김장 나누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배추 3,000원 × 1,200포기	3,600	3,600	
		· 무 2,000원 × 700개	1,400	1,400	
		· 고춧가루 40,000원 × 110kg	4,400	4,400	
		· 김치통 5,000원 × 380개	1,900	1,900	
		· 부재료 구입비 (소금, 마늘, 새우젓, 쪽파, 갖, 생강, 비닐 등)	1,900	700	1,2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 추진실적 - 일 시 : 2017. 11월중 - 장 소 : 김포관내 - 참여인원 : 150여명 - 집행금액 : 12,000천원 - 사업성과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여성단체간 유대감 강화 및 지역사회 실천으로 훈훈한 지역사회조성,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거동불편장애인 등 저소득층 300가구에 김장김치 배부	
2018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 추진실적 - 일 시 : 2018. 11월중 - 장 소 : 김포관내 - 참여인원 : 150여명 - 집행금액 : 12,000천원 - 사업성과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여성단체간 유대감 강화 및 지역사회 실천으로 훈훈한 지역사회조성,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거동불편장애인 등 저소득층 340가구에 김장김치 배부	
2019년	11월 추진예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7년	17,300	12,000	5,300	17,300	12,000	5,300	0	0	0	
2018년	14,600	12,000	2,600	14,600	12,000	2,600	0	0	0	
2019년	7,700	7,000	700	0	0	0	7,700	7,000	700	6.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행정7급 양혜정	전화	5583
-----	-------	------------	-----	----------	----	------

#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P - 11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촬영 상시점검으로 여성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13,140	0	15,330	-2,190	13,140
국 비						
도 비	0	6,570	0	7,665	-1,095	6,570
시 비	0	6,570	0	7,665	-1,095	6,5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불법촬영 상시점검 전담인력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도비사업)
- 사업기간 단축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2019. 8월부터 점검 실시)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b>제3조(국가 등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불법촬영 상시점검 인력배치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1,095,000원 × 2명 × 6월 = 13,1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불법촬영 상시점검 전담인력 수요조사 실시
- 2019.08 : 불법촬영 상시점검 전담인력 채용 및 상시점검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행정7급 양혜정	전화	5583
-----	-------	------------	-----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P - 11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 사업규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가족의 보호 및 지원으로 입소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 구매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000	0	0	2,000	2,000	
국 비		1,200			1,200	1,200	
도 비		120			120	120	
시 비	0	680	0	0	680	68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경기도 여성정책과-12745(2019.08.16.))
-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입소자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도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 구매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400,000원 × 5대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12 : 공기청정기 구매·배부 및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행정7급 양혜정	전화	5583
-----	-------	------------	-----	----------	----	------

#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 (P - 12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홈방범 65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여성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4,442	7,871	9,299	0	-1,428	-6,571
국 비						
도 비	10,109	5,504	6,504	0	-1,000	-4,605
시 비	4,333	2,367	2,795	0	-428	-1,96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홈방범 서비스 지원가구 중 지원기간 만료(2년)로 인해 지원 가구 수 감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조제1항
근거내용	<p><b>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b>제4조(국가 등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여성세대주 홈방범서비스 지원 추진으로 범죄 예방 및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홈방범 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홈방범 서비스 지원 - 여성세대주 홈방범 서비스 · 이용료 9,900원 × 68가구 × 5월 · 이용료 9,900원 × 65가구 × 7월	= 7,87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1~12 : 홈방범서비스 이용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홈방범서비스 : 29가구 상당소 안심벨 및 CCTV : 2개소 여성안전지킴이집(편의점) : 94개소	
2018년	홈방범서비스 68가구 상당소 안심벨 및 CCTV 2개소 여성안심지킴이집 93개소	
2019년	홈방범서비스 : 68가구 여성안심지킴이집 93개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4,070	13,967	-	103	
2018년	14,442	13,602	-	840	
2019년	9,299	3,924	-	5,375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행정9급 배지현	전화	5584
-----	-------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 (P - 12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0월 ~ 2020. 6월
- 위 치 : 김포한강1로 77-39
- 사업규모 : 1개소, 증축면적703.06㎡, 도시관리계획변경(주차장 확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 및 센터 활성화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60,802	0	15,000	145,802	160,802	
국 비							
도 비							
시 비	0	160,802	0	15,000	145,802	160,802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증축과 관련 사전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B등급-양호에 따라 이후 절차인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및 주차장 확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 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용역비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김포시 보육 조례	제36조 제29조 제11호
근거내용	<b>제36조(비용의 보조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b>제29조(보조금의 지급)</b> 1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2019.8월	2019.3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비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예산확보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 및 센터 활성화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	401-01 시설비	합계 = 145,802	
		·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85,802,000원 - 1,898,262,000원 × 4.52% = 85,802,000원 (703.06㎡(증축면적) × 2,700,000원= 1,898,262,000원) = 145,802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비 : 60,000,000원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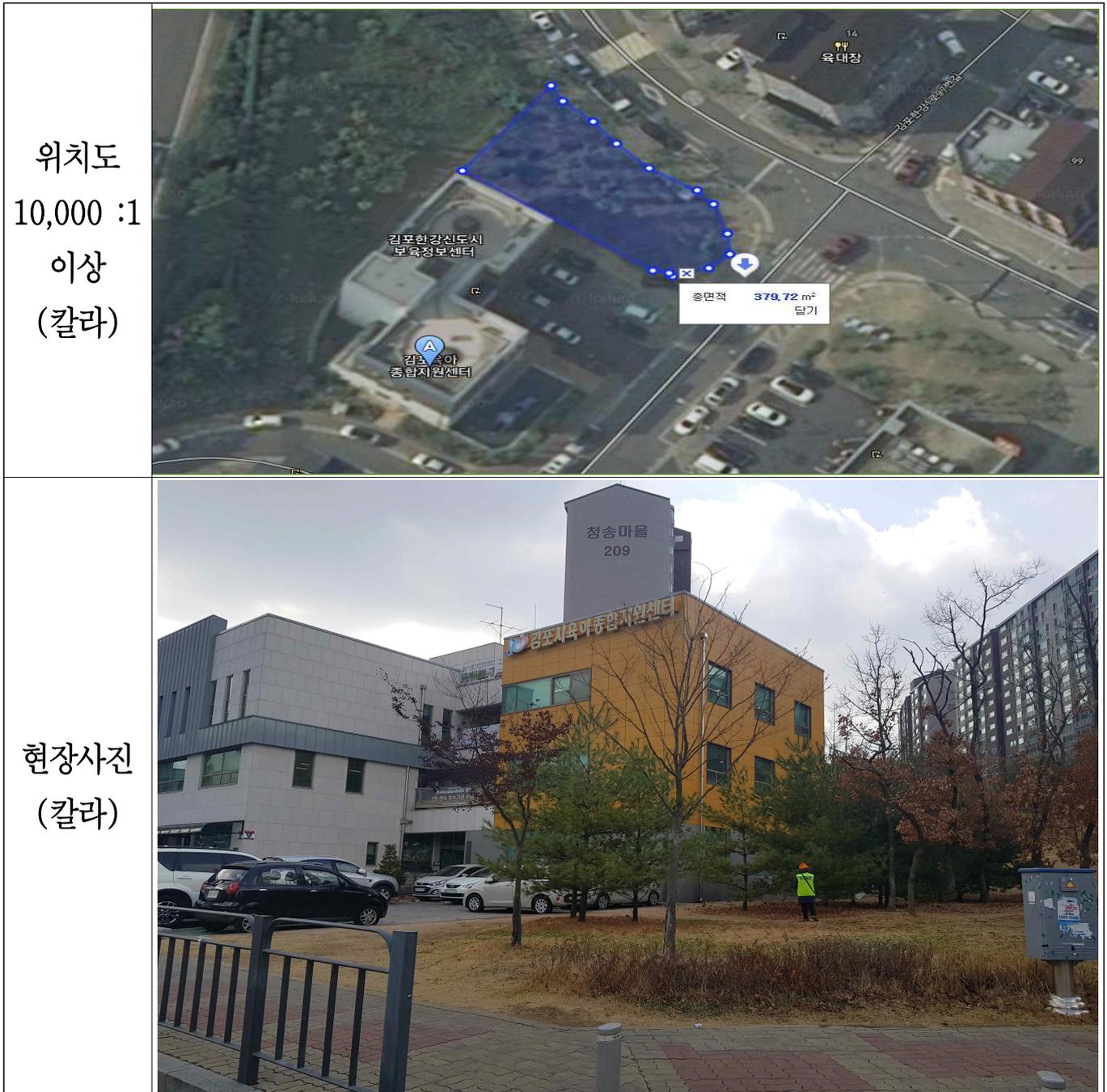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380,515		160,802		15,000	145,802	2,219,713	
공정별	설계비	85,802	85,802			85,802		
	용역비	75,000	75,000		15,000	60,000		
	공사비	1,898,262					1,898,262	
	감리비	21,451					21,451	
	부대비	300,000					30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 2019.05.~2019.06. : 건물안전진단 용역 (13,500,000원)
- 2019.08. : 투자심사
- 2019.10~2020.0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신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20.~2021. : 공사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탁수진	담당자	복지6급 탁수진	전화	5588
-----	-------	------------	-----	----------	----	------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P - 12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월 ~ 12월
- 위 치 : 김포한강1로 77-39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 1명씩 배치하여 관내 아이사랑 놀이터 등 이용하는 부모 및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놀이방법 지도 및 놀이프로그램 등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0,000	80,000	-80,000	20,000	20,000	
국 비							
도 비	0	10,000	40,000	-40,000	10,000	10,000	
시 비	0	10,000	40,000	-40,000	10,000	1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보육정책과-10232(2019.6.19.) 확정내시 통보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 1명 배치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근거내용	<p><b>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b></p> <p>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p> <p>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놀이지도사 배치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기능강화 및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활성화 제고
- 자녀의 강점에 따른 놀이방법과 영유아 상호작용기술 지도
- 부모-자녀 놀이프로그램 운영
- 가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콘텐츠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등 배치	307-05 민간위탁금	· 놀이지도사 1명 × 20,000,000원(6개월) = 20,000 - 인건비 : 2,976,000원 × 6개월 = 17,856 - 운영비 : 358,000원 × 6개월 = 2,144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19.09. : 놀이지도사 공개채용
  - 2019.10.~12. : 놀이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탁수진	담당자	행정8급 소리나	전화	5589
-----	-------	------------	-----	----------	----	------

# (보조교사 인건비)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5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41,687	4,197,656	4,416,000	-825,140	606,796	1,655,969	
국 비	1,270,844	2,098,828	2,208,000	-412,570	303,398	825,412	
도 비	635,422	1,049,414	1,104,000	-206,285	151,699	412,706	
시 비	635,422	1,049,414	1,104,000	-206,285	151,699	412,70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하반기 보조교사 지원인원 증가로 증액 내시(상반기 310명 → 하반기 457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b>제36조(비용의 보조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향상
-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보조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합계 ≒ 4,197,656	
		· 973,000원 × 310명 × 8개월 = 2,419,012	
		· 973,000원 × 457명 × 4개월 = 1,778,64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2. : 2019년 보조교사 1차 선정 (310명 지원)
- 2019.05. : 2019년 보조교사 2차 선정 (348명 지원)
- 2019.09. : 2019년 보조교사 3차 선정 (457명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3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충족률80%이상 월 평균 200명, 811천원/인	
2018년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충족률80%이상 월 평균 270명, 832천원/인	
2019년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충족률70%이상 월 평균 310명, 973천원/인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744,400	1,491,620	-	252,780	
2018년	2,541,687	2,220,650	-	252,780	
2019년	3,590,860	1,626,659	-	1,964,201	6.30.일 기준 집행현황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탁수진	담당자	행정8급 소리나	전화	5589
-----	-------	------------	-----	----------	----	------

## (누리과정 운영)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규모 : 4,49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4,865,000	16,053,285	15,478,200	0	575,085	1,188,285
국 비						
도 비	14,865,000	16,053,285	15,478,200	0	575,085	1,188,285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누리과정 운영 지급대상자 증가로 증액 내시(4,448명 → 4,498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b>제36조(비용의 보조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보장
-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예탁금 지출에 따라 통계목 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누리과정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대상 : 만3~5세 아동 및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 지원종류 :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 월 220 ~ 33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 매월 처우개선비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아동 수로 균분하여 지원 · 누리과정 보육료 : 월 220천원 지원	
		<b>합계    =           16,053,285</b>	
		· 처우개선비 : 330,000원×360명×12개월 = 1,425,600	
		· 운영비 : 1,650,000원×138개소×12개월 = 2,752,965	
		· 보육료 : 220,000원×4,498명×12개월 = 11,874,7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계		4,593	
	누리과정 보육료	월 220천원/인	4,286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00천원/인		
2018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총계		4,951	
	누리과정 보육료	월 220천원/인	4,635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00천원/인		
2019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월)	2019년 6.30일 기준
	총계		5,408	
	누리과정 보육료	월 220천원/인	5,055	
	누리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만3~5세당 7만원 중 교사처우 지급 후 남은 금액 (매월 아동 현원기준 균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월 330천원/인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5,032,000	14,876,916	-	155,084	
2018년	14,865,000	14,865,000	-	0	
2019년	15,478,200	9,982,331	-	5,495,868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탁수진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효정	전화	5590
				사회복지9급 김형규		5606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P - 12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54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730,000	3,145,000	3,045,000	0	100,000	415,000	
국 비							
도 비	546,000	629,000	609,000	0	20,000	83,000	
시 비	2,184,000	2,516,000	2,436,000	0	80,000	33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급대상자 증가로 증액 내시(3,435명 → 3,547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b>제17조(비용의 보조)</b> 2. 휴일보육·방과 후 보육·취업여성 등 자녀 보육지원 사업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2018.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누리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 경감
- 보육료 예탁금 지출에 따라 통계목 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고, 경기도 내에 주민 등록을 둔 만3~5세 아동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내용 (단위: 원)				
		구분	민간어린이집 만 3세	민간어린이집 만4~5세		가정어린이집 만3~5세
		월 지원액	89,000	66,000		9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어린이집 만 3세 89,000원×1,027명</li> <li>· 민간어린이집 만 4~5세 66,000원×2,340명 × 12월 = 3,145,000</li> <li>·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92,000원×180명</li> </ul>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월평균 223,333천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월 51천원 ~ 60천원/인	2,910명/월	
2018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월 60천원 ~ 85천원/인	3,198명/월	
2019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6.30.일 기준 집행현황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월 66천원 ~ 92천원/인	3,451명/월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068,595	1,777,514	-	291,081	
2018년	2,730,000	2,644,404	-	547,393	
2019년	3,045,000	1,340,000	-	1,705,000	2019.6.3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탁수진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효정	전화	5590
-----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 (P - 12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4,233명(정부미지원 11,637명 / 정부지원·공공형 2,59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813,482	0	0	813,482	
국 비						
도 비	0	244,045	0	0	244,045	244,045
시 비	0	569,437	0	0	569,437	569,43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보육정책과-10296(2019.06.20.) 확정내시 통보
- 아동의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36조
근거내용	<b>제36조(비용의 보조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
- (급식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7,400원/월
- (운영비)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2,600원/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합계 = 813,482	
		· (급식비)7,400원/월 × 14,233명 × 6월 = 631,945	
		· (운영비)2,600원/월 × 11,637명 × 6월 = 181,537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19.09.~12. :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탁수진	담당자	행정8급 소리나	전화	5589
-----	-------	------------	-----	----------	----	------

# (어린이집 환경개선) (P - 12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립 및 법인어린이집 중 노후로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개보수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3,616	80,400	60,000	0	20,400	26,784
국 비	26,808	40,200	30,000	0	10,200	13,392
도 비	13,404	20,100	15,000	0	5,100	6,696
시 비	13,404	20,100	15,000	0	5,100	6,69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기존 기능보강 대상 2개소(마송어린이집, 매수리10단지어린이집)에서 기능보강 추가 수요조사에 따른 1개소 추가(솔터어린이집) 지원 대상 선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b>제36조(비용의 보조 등)</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 중 건물 및 시설수리가 필요한 어린이집 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계 = 80,400	
어린이집 환경개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개보수 지원 : 30,000,000원*2개소 = 60,000 · 개보수 지원 : 20,400,000원*1개소(추가) = 20,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6~2018.07 : 기본계획수립
- 2019.03~2019.06 : 추진계획수립
- 2019.08~2019.11 : 사업집행
- 2019.10~2019.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사업내용 :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개보수비 지원 (단위:원, 개소)				
	사업명	집행액	지원개소수	비고	
	개보수 지원	58,602,000	3		
2018년	○ 사업내용 :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개보수비 지원 (단위:원, 개소)				
	사업명	집행액	지원개소수	비고	
	개보수 지원	53,616,000	3		
2019년	○ 사업내용 :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개보수비 지원 예정 (단위:원, 개소)				
	사업명	집행액	지원개소수	비고	
	개보수 지원	-	3	11월 집행예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58,602	58,602	-	-	
2018년	53,616	53,616	-	-	
2019년	60,000	-	-	60,00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도팀장 박민수	담당자	사회복지9급 정병남	전화	5529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 한 시트 당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부스터, 카시트벨트 등)를 장착하여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장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유아보호용장구지원 : 70,000원 × 1,800개 = 12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경위

- 2019.02 :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치 수요조사

○ 향후계획

- 2019.04~2019.12. :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치 지원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예정				
	사업명	집행액	지원개수	비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	1,800개	11월 집행예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1,720	-	-	111,72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보육지도팀장 박민수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성숙	전화	5587
-----	-------	------------	-----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P - 12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규모 : 13명, 1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자립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040	25,740	24,340	-1,800	3,200	13,700	
국 비	9,632	20,592	19,472	-1,440	2,560	10,960	
도 비	1,204	2,574	2,434	-180	320	1,370	
시 비	1,204	2,574	2,434	-180	320	1,3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 7월 경기도 변경 내시
- 2019년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금액 상향
  - 2018년 월 5만원 지급 → 2019년 월 15만원 지급
  - 전년 대비 6월 말 기준 인원수(104명 → 86명)는 감소했으나 지급액(5,170천원 → 12,850천원) 증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4
근거내용	<b>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b>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합 계 = 25,740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150,000원×13명×12개월 = 23,000	
		· 검정고시 학습비 : 1,540,000원×1명×1회/1년 = 1,540	
		· 자립지원촉진수당 : 100,000원×1가구×12개월 = 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12 : 사업 지속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사업명	건수(명)	집행액	
	합 계	247	12,33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247	12,330	
2018년	사업명	건수(명)	집행액	
	합 계	208	10,40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208	10,400	
2019년 (6월 말)	사업명	건수(명)	집행액	
	합 계	86	12,85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86	12,850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3,440	8,350	-	1,110	
2018년	12,040	12,330	-	1,640	
2019년	22,540	12,850	-	9,69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장 박혜경	담당자	복지9급 박주연	전화	5608
-----	-------	-------------	-----	----------	----	------

#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인건비)) (P - 12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6월 ~ 12월
- 위 치 : 매수리마을 10단지, 수정마을 휴먼시아 2단지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50,376	39,900	42,380	-31,904	50,376	
국 비		25,188	19,950	21,190	-15,952	25,188	
도 비							
시 비	0	25,188	19,950	21,190	-15,952	25,18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지연으로 인건비 감소
- 「다함께 돌봄사업」 확정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2783(2019.08.16.))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제5조
근거내용	<p><b>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2019.3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인건비)	307-05 민간위탁금	합 계 =	50,376
		· 센터장 2,138,000원×6개월×2개소	= 25,656
		· 돌봄교사(시간제) 1,030,000원×2명×6개월×2개소	= 24,727

개소당  
센터장 1,  
돌봄교사 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대상지 주민동의 및 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9.08~09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2019.09 :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2019.10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행정7급 양혜정	전화	5583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체 육 과





# 공공체육시설 정비 (P - 12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9.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공공체육시설 정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체육환경개선 및 이용자 편의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63,530	727,560	138,410	382,100	207,050	364,030	
국 비							
도 비							
시 비	363,530	727,560	138,410	382,100	207,050	364,03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일몰시간 이후의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신곡죽구장내 조명시설 설치
- 솔터체육공원 내 그늘막을 설치하여, 폭염 경보 시 대피시설 확보 및 휴식 공간 제공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구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시민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일조
-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물을 개선하여 야외체육시설의 활성화 증진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207,050	
공공체육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시설비 합계 = 150,000	
		o 신곡죽구장 조명설치 = 20,000	
		· 15KW신설 전기공사 = 11,000	
		· 조명기 폴대설치 1,500,000원 × 2주 = 3,000	
		· 투광등 설치 500,000원 × 10개 = 5,000	
		· 한전불입금 = 1,000	
	o 솔터체육공원 그늘막 설치 = 100,000		
	· 막구조 설치 150,000원 × 565㎡ = 85,000		
	· 지주설치 1,850,000원 × 8주 = 15,000		
	o 파르코스체육공원 보수공사 = 30,000		
· 목재계단 보수 100,000원 × 100EA = 10,000			
· 파고라 정비 10,000,000원 × 1개 = 10,000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 2,500,000원 × 4개 = 1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o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용품 구입 = 57,050		
	· 좌식배구지주 6세트 × 1,167,000원 = 7,000		
	· 골볼골대 6세트 × 5,500,000원 = 33,000		
	· 이동식수중리프트 1개 × 17,050,000원 = 17,050		
		- 정수대상 X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27,560		727,560	138,410	382,100	207,05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727,560		727,560	138,410	382,100	207,05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

- 2019. 09. : 파르코스체육공원 정비
- 2019. 10. : 솔터구장 그늘막 설치
- 2019. 10. : 신곡죽구장 조명설치
- 2019. 10. : 장애인 체육용품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공공체육시설 정비	- 공공체육시설 LED 조명등 교체공사 - 걸포다목적체육관 외벽보수공사 - 솔터체육공원 테니스 관리동 사무실 정비공사 등	
2018년	공공체육시설 정비	- 김포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지붕보수공사 - 솔터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동 전기증설공사 - 풍년테니스장 보수공사 - 대곶초테니스장 조도개선 공사 - 종합운동장 선수대기실 보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	- 전호배드민턴장 : 5,144,000원 × 2대 - 김포시장애인탁구장 : 1,690,000원 × 1대 - 김포시장애인당구장 : 1,100,000원 × 1대	
	공공체육시설 심실제세동기 구입	- 전호배드민턴장 : 1,880,000원 × 1대	
	그라운드골프장 잔디관리 용품 구입	- 잔디깎기 : 650,000원 × 1대 - 예 초 기 : 300,000원 × 1대	
2019년	공공체육시설 정비	- 노을체육관 전기 증설공사 - 시민축구단 사무실 정비공사 - 파크골프장 잔디 생육환경 정비공사 - 김포소방서 테니스장 정비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정설기 구입	- 사계절썰매장 정설기 : 166,100,000원 × 1대	
	공공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	- 노을체육관 : 5,144,000원 × 4대	
	공공체육시설 수강용 의자 및 탁자 구입	- 시민회관 다목적홀 수강용 의자 : 181,000원 × 30개 - 시민회관 다목적홀 수강용 탁자 : 279,000원 × 15개 - 시민회관 다목적홀 전자교탁 : 3,300,000 × 1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75,000	225,456	32,785	16,759	
2018년	396,315	395,139	0	1,176	
2019년	520,510	378,582	0	141,92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585
-----	-----	------------	-----	----------	----	------

# 솔터구장 정비공사(P - 12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02. ~ 2021.06.                      ○ 위    치 :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8-3(마산동)
- 사업규모 : 천연잔디 축구장 및 관중석설치, 인조잔디 축구장 1면추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솔터구장을 정식규격의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 구장으로 확충하여, 김포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축구장을 제공하고, K-3 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700,000	5,300,000	3,000,000		2,300,000	1,600,000
국 비		0				0
도 비						
시 비	3,700,000	5,300,000	3,000,000		2,300,000	1,60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솔터구장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요청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축구장 조성
- K-3 시민축구단 경기운영을 위한 천연잔디 축구장 및 관람석 설치
-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인한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0 슬터축구장 정비공사 = 9,000,000	
관람석 설치	401-01 시설비	· 관람석 설치 : 연면적2,040*2,034천원 = 4,150,000 · 천연잔디 축구장 : 105m×68m*84,000원 = 600,000 · 인조잔디 축구장 : 105m×68m*112,000원 = 800,000 · 전기공사 : 조명탑(8개소)+전광판 등 = 1,500,000 · 토목공사 : 부지조성 및 옹벽설치 등 = 500,000 · 통신 및 소방공사 : 통신, 방송, 소방 = 300,000 · 조경공사 : 1식 = 400,000 · 폐 기 물 : 폐기물처리 1식 = 200,000	
설계용역비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용역 1식 : 1.8억원 = 200,000 · 교통영향평가 1식 : 0.2억원	
감리비	401-01 시설비	· 건축감리비 1식 : 350억원 = 350,000	

※ 슬터구장 정비공사 총사업비 9,000백만원 중 부족사업비 2,300백만원 추경확보 건의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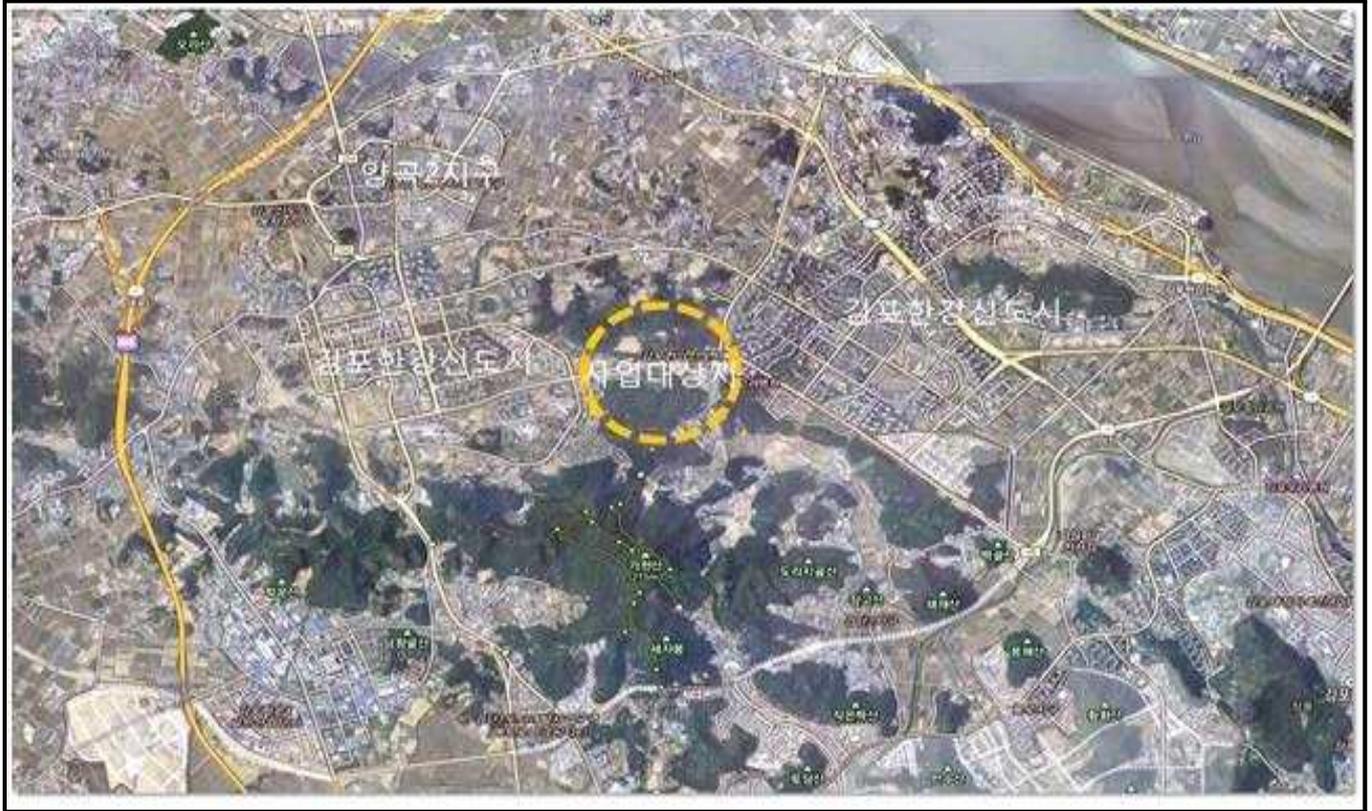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000,000	3,700,000	5,300,000	3,000,000	0	2,3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보상비	0					
	공사비	8,450,000	3,500,000	4,950,000	3,000,000		1,950,000
	감리비	350,000		350,000			350,000
	부대비	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02.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18. 06.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8. 09.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9. 06. : 착공
- 2021. 01. : 준공

□ 위치도



□ 정비계획(안)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최태수	전화	2584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100,000	
오니산리풋살장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오니산리 풋살장 정비공사 = 100,000 · 인조잔디 교체 65,000원 × 1,200㎡ = 78,000 · 폐기물처리 18,300원 × 1,200㎡ = 22,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0		100,000	0	0	100,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00,000		100,000		10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

- 2019. 09. : 공사 착공
- 2019. 12. : 공사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585
-----	-----	------------	-----	----------	----	------

#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P - 12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9. ~ 2020.03.                      ○ 위    치 : 김포시 돌문로 15번길 20(김포종합운동장)
- 사업규모 : 노후시설물 개보수(균열보수 및 외벽도색 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종합운동장은 1993년 4월 준공되어, 26년 5개월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 2018년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시 안전등급 B등급 판정받아 시설물 보수가 시급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00,000			700,000	
국 비		350,000			350,000	
도 비						
시 비		350,000			350,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50백만원을 교부받았으며,
- 국비(50):시비(50) 매칭사업으로 시비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코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함
- 시설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도장박리 현상이 발생되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시설물의 기대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보수보강공사 시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700,000	
공사비	401-01 시설비	· 균열보수 $3,502\text{m}^2 \times 290,500\text{원} \times 30\%$ = 305,000 · 외벽도색 $4,060\text{m}^2 \times 49,260\text{원}$ = 200,000 · 금속창호 및 방화문 $50\text{개소} \times 1,000\text{원}$ = 150,000 · 안전시설보수(스텐드안전난간) $1\text{식} \times 25,000,000\text{원}$ = 25,000	
용역비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 2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00,000	0	700,000	0	0	7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0	0					
	공사비	680,000		680,000		68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

- 2019. 10. : 실시설계용역
- 2019. 11. : 착공
- 2020. 03. :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585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72,000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308-08	· 설치공사 216,670원*120㎡	= 26,000
	교육기관에 대한	· 시스템설치	= 24,000
	보조	· 콘텐츠구입	= 2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4. :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수요조사 제출
- 2019. 04. : 사업 대상 선정(월곶초) 및 확정 내시
- 2019. 06. : 자금교부
- 2019. 07. : 교육경비심의
- 2019. 09. : 사업비 교부(김포시→월곶초)
- 2019.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585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9,800,000	
공사비	401-01 시설비	· 건축 1,375,000원/m <sup>2</sup> × 4,000m <sup>2</sup> = 5,500,000	
		· 기계 175,000원/m <sup>2</sup> × 4,000m <sup>2</sup> = 700,000	
		· 전기 225,000원/m <sup>2</sup> × 4,000m <sup>2</sup> = 900,000	
		· 통신 100,000원/m <sup>2</sup> × 4,000m <sup>2</sup> = 400,000	
		· 소방 75,000원/m <sup>2</sup> × 4,000m <sup>2</sup> = 300,000	
		· 부대시설 321,250원/m <sup>2</sup> × 4,000m <sup>2</sup> = 1,285,000	
용역비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 200,000	
		·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 15,000	
		· 건설사업관리용역 = 500,000	

※ 총사업비 9,800백만원 중 2019년 사업비 6,500백만원에 대하여 제2회추경 예산요구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800,000		6,500,000			6,500,000	3,300,000
공 정 별	설계비	215,000	215,000			215,000	
	보상비						
	공사비	9,085,000		5,785,000		5,785,000	3,300,000
	감리비	500,000		500,000		500,000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2. : 지방재정 투자 심사(경기도)
- 2019. 0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20. 0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 03. : 착공
- 2021. 12. : 준공
- 2022. 3. : 개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김포시
2019년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김포시 경기도

○ 최근3년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최태수	전화	2584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1,000,000	
공사비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관 건립 = 890,000</li> <li>▸ 스포츠 조명 = 90,000</li> </ul>	족구장
용역비	401-01 시설비	▸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 2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000,000		1,000,000			1,00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공사비	980,000	980,000			98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

- 2019. 7.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 2019. 7.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착수
- 2019. 12.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준공
- 2019. 12. : 착공
- 2020. 03. :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최태수	전화	2584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1,000,000	
공사비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관 건립 = 890,000</li> <li>▶ 스포츠 조명 = 90,000</li> </ul>	탁구장
용역비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 20,000</li> </ul>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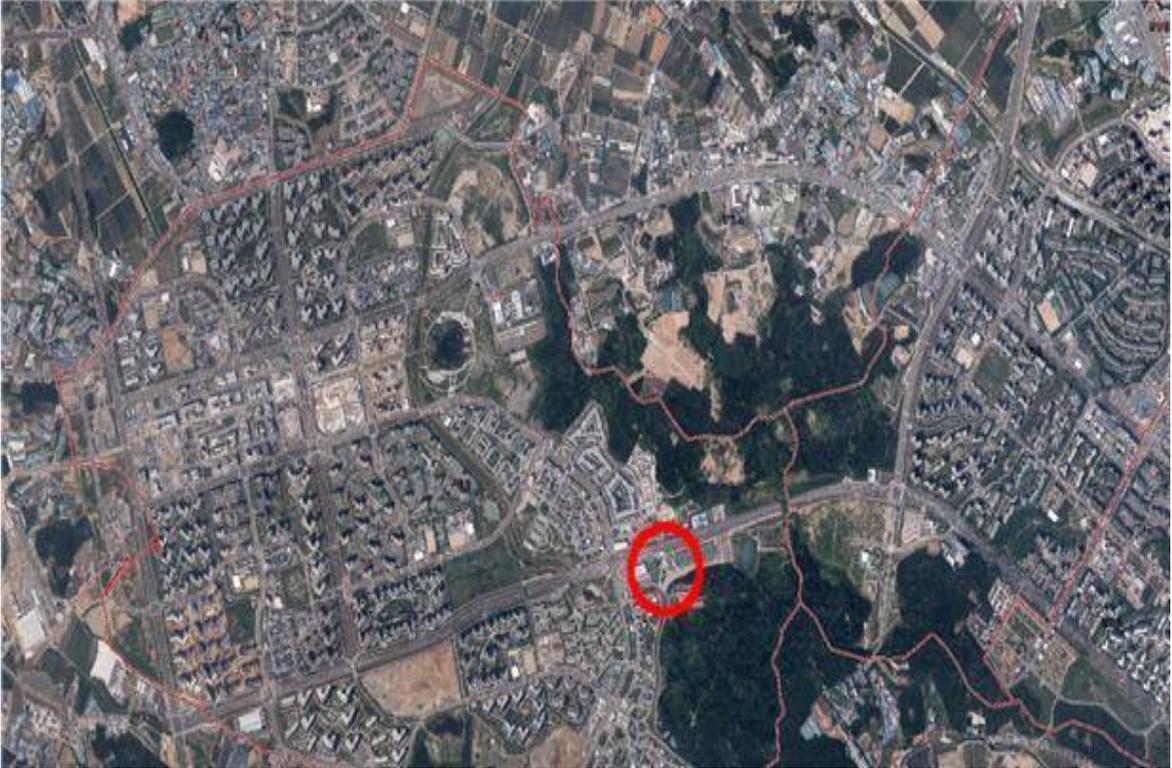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000,000		1,000,000			1,00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공사비	980,000	980,000			98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

- 2019. 7.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 2019. 7.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착수
- 2019. 12. :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준공
- 2019. 12. : 착공
- 2020. 03. :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p>	
<p>현장사진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최태수	전화	2584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 통		= 5,000,000	
보상비	401-01 시설비	· 조성원가 1,829,153원 × 2,231㎡ = 4,080,840 · 이 자 44개월 × 17,000,000원/월 = 748,000 · 기타비용(등기수수료, 실시설계용역 일부) = 171,160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2조 4항에 따라 2016.05.01. 준공이후 19년12월 까지 발생한 이자 연이율 5%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F)	기투자 (A)	2019년 예산액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8,200,000		5,000,000			5,000,000	13,200,000	
공 정 별	설계비	500,000					500,000	
	보상비	5,000,000	5,000,000			5,000,000		
	공사비	12,000,000					12,000,000	
	감리비	700,000					700,000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08. : 지방재정 투자 심사(경기도)
- 2019. 10. : 토지매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20.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0. 10. : 착공
- 2022. 12.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김포시
2019년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김포시 경기도

○ 최근3년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최태수	전화	2584
-----	-----	------------	-----	----------	----	------

#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 (P - 12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9.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걸포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공체육시설 내 강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142,438	3,743,235	3,484,895	258,340	0	600,797	
국 비							
도 비							
시 비	3,142,438	3,743,235	3,484,895	258,340	0	600,797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강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로 부족분 이전(걸포다목적체육관 → 생활체육관)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률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공체육시설내 강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
- 생활체육관 강습프로그램 강사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전(걸포다목적체육관 → 생활체육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김포생활체육관 비율제 강습 운영비 = 45,000 · 걸포다목적체육관 비율제 강습 운영비 = -45,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공공체육시설위탁사업비 지원	
2018년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	
2019년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905,736	2,602,600	0	303,136	
2018년	3,142,438	2,749,602	0	392,836	
2019년	3,743,235		0		6.30.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상영	담당자	시설7급 김지은	전화	2585
-----	-----	------------	-----	----------	----	------

# 가맹단체공유재산 임대료 지원(P - 130)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시체육회 대표자 : 정하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A-B)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927	21,359	18,159		3,200	5,432	
시 비	15,927	21,359	18,159		3,200	5,432	
자부담	-	-	-		-	-	

**□ 예산 증감사유**

- 가맹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분 반영, 사무실 소요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근거내용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맹단체 임대료 감정평가에 따른 인상분 반영, 여성축구단 사무실 신설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총 계		3,200	3,200		
합 계		3,200	3,200		
가맹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200	3,200		- 축구협회 외 11개 단체 임대료 본예산(18,159천원) 요구분 × 17.6%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가맹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반액 지원 - 총 9개소	
2018년	- 가맹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반액 지원 - 총 11개소	
2019년	- 가맹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반액 지원 - 총 12개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7년	15,927	15,927		13,672	13,672		2,255	2,255		
2018년	15,927	15,927		15,047	15,047		880	880		
2019년	18,159	18,159		16,769	16,769		1,390	1,390		6.30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장석희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2582
-----	-----	------------	-----	----------	----	------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019.09.02. ~ 2019.09.11.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보 권 소】**

김 포 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

# 목 차

## ■ 보 건 소

- ◎ 보건행정과 ..... 5
- ◎ 보건사업과 ..... 17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보건행정과





# (체제적인 차량관리) (P - 19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구급차 1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구급차 사용연한 종료에 따른 교체구입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45,000	0		45,000	
국 비						
도 비						
시 비	0	45,000	0		45,000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구급차 운행연한(최대 11년) 도래에 따른 보건소 구급차 교체구입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근거내용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운행연한) 규정
  - 구급차 운행연한 : 9년
  - 구급차 기준 및 임시검사 적합시 6개월마다 총4회(2년)까지 연장가능
- 보건소 구급차 현황
  - 차 종 :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 구입일 : 2009.01.12.
  - 운행기한 만료일 : 2019.12.31. (11년차) → 4회 연장 사용 종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체계적인 차량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구급차 교체구입 45,000,000원 * 1대 = 45,000	정수승인완료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0~11. : 구급차 교체구입 및 차량등록
- 2019.12.31. : 구급차 운행기한 만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이기모	담당자	보건6급 박봉정	전화	5007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북부권 공공보건기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 실내외 간판 및 표찰 - 실외간판 및 현판 3,200,000원*1식 = 3,200 - 실내 간판 및 표찰 3,000,000원*1식 = 3,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출퇴근확인용 정맥인식기 4,500,000원*1대 = 4,500 ·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3,000,000원*1대 = 3,000 · 청사관리용 청소기 230,000원*1대 = 230 · 재활운동 작업치료세트 6,120,000원*1대 = 6,120 · 상담실 및 교육실 장비 구입 - 무선마이크장치 800,000원*1대 = 800 - 비디오프로젝트 1,870,000원*1대 = 1,870 - 프로젝트용 스크린 500,000원*1대 = 500 - 노트북 1,200,000원*1대 = 1,200 - 컴퓨터 1,240,000원*3대 = 3,720 - 이동식 텔레비전 1,200,000원*1세트 = 1,200 - 전동식 현수막게시대 = 600 · 상담실 및 교육실 가구 구입 - 상담실 책상 200,000원*6개 = 1,200 - 교육용 책상 250,000원*20개 = 5,000 - 교육용 의자 90,000원*50개 = 4,500 - 교육실 수납장 270,000원*12개 = 3,240 - 강연대 160,000원*2개 = 320 · 치매가족카페 가구 구입 - 가족카페 테이블 240,000원*1개 = 240 - 가족카페 소파 160,000원*8개 = 1,280 - 탕비장 160,000원* 2개 = 320 · 치매가족카페용 냉장고 구입 700,000원*1대 = 700	<정수승인완료>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육실 ·비디오프로젝트 ·노트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2 : 사업계획서 수립
- 2019.07~08. : 통진임시청사 임대계약 및 리모델링
- 2019.09~ : 북부보건과 신설 및 업무개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이기모	담당자	보건행정팀장 이기모	전화	5005
-----	-------	------------	-----	------------	----	------

# (표본감시운영경비) (P - 1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4개소(해맑은비뇨기과, 민홍기안과, 아이민산부인과, 봄소아청소년과의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요감염병 발생추이 관찰, 유행확인 및 감시로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600	5,880	6,600	-720	-720	
국 비	3,300	2,940	3,300	-360	-360	
도 비	990	882	990	-108	-108	
시 비	2,310	2,058	2,310	-252	-252	

## □ 예산 증감사유

- 표본감시지정 의료기관 1개소(김포우리병원)의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운영경비지원 제외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근거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주요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병,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안과감염병,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등)의 발생 문제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발생 추이 관찰을 위하여 지정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급
- 집단발생 유행을 확인하고 홍보 및 교육하여 감염병을 예방관리 하고자 함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운영 경비	301-12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기타보상금)	· 성매개감염병 30,000원*12월*2개소 = 720	
		· 안과감염병 30,000원*12월*1개소 = 360	
		· 인플 및 수족구 감시 운영비 120,000원*12월*1개소 = 1,440	
		· 인플실험실 감시 운영비 140,000원*12월*1개소 = 1,680	
		· 인플루엔자 급성설사질환 감시 운영비 140,000원*12월*1개소 = 1,6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운영경비 지급
- 2019.01~12.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매월 화요일 질병관리본부 웹(<https://is.cdc.go.kr>)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안과감염병(민홍기안과의원) 365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해맑은비뇨기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98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인플루엔자(봄소아과청소년과의원) 583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김포우리병원) 2,694명 표본감시 보고	
2018년	- 안과감염병(민홍기안과의원) 427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해맑은비뇨기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87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인플루엔자(봄소아과청소년과의원) 583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김포우리병원) 3,861명 표본감시 보고	
2019년 6월말 기준	- 안과감염병(민홍기안과의원) 51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해맑은비뇨기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67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인플루엔자(봄소아과청소년과의원) 583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김포우리병원) 1,500명 표본감시 보고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960	6,960	-	0	5개소
2018년	6,600	6,600	-	0	5개소
2019년	5,880	5,880	-	0	4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김애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청희	전화	5036
-----	-------	-------------	-----	------------	----	------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P - 1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6,000	14,000	16,000		-2,000	
국 비	16,000	14,000	16,000		-2,000	
도 비						
시 비						

## □ 예산 증감사유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 참여병원 수 증가에 따라 균등지원을 위해 운영 지원금 축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근거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sup>1)</sup>)에 대한 표본감시 활동 및 예방관리 참여병원 운영비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의료기관 :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1)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01-12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기타보상금)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예방관리 참여기관 7,000,00원*2개소 = 1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2019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신청서 제출
- 2019.03. : 2019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 제출
- 2019.04. : 2019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급
- 2019.12.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관리 기술지원(사업총괄: 질병관리본부)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36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감염관리 52회 - 원내감염관리 교육(손위생교육, 감염관리 캠페인 개최) 및 회의 40회	김포우리병원
2018년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관리 기술지원(사업총괄: 질병관리본부)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62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감염관리 108회 -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87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2019년 6월말 기준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관리 기술지원(사업총괄: 질병관리본부)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28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감염관리 52회 -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46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9,000	9,000	-	9	1개소
2018년	16,000	16,000	-	18	2개소
2019년	14,000	14,000	-	0	2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김애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청희	전화	5036
-----	-------	-------------	-----	------------	----	------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P - 19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 사업규모 : 8,4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염성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로 결핵 확산 방지 및 시민의 건강권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4,677	65,513	75,513	-10,000	-29,164	
국 비	47,339	32,756	37,756	-5,000	-14,583	
도 비	14,202	9,827	11,327	-1,500	-4,375	
시 비	33,136	22,930	26,430	-3,500	-10,20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감소에 따른 접촉자 검진비등 결핵역학조사 관련 비용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제26조
근거내용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결핵환자등록관리 250명,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6,000명, 결핵역학조사 650명, 가족접촉자관리 300명, 결핵예방홍보 및 교육 1,200명
-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감소에 따른 접촉자 검진비등 결핵역학조사 관련 비용 감액 필요
-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또는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 대상 입원명령 등 치료관리
-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
-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 치료함으로써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1,470,000원*1명 = 1,470</li> <li>·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9,660원*1,040건 = 10,046</li> <li>·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비 28,000원*1,140건 = 31,920</li> <li>·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228,000원*4회 = 912</li> <li>· 결핵환자 가족검진 41,600원*253명 = 10,525</li> <li>· 잠복결핵검진 28,000원*380명 = 10,640</li> </ul>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019.02 : 2019년 결핵관리사업 계획
- 2019.01~2019.02 : 취약계층 대상 결핵이동검진 및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결핵검진 계획
- 2019.01~2019.12 : 결핵예방 홍보 및 교육
- 2019.01~2019.12 : 결핵 신고서 및 환자관리, 집단시설 역학조사 실시, 결핵환자 가족검진 실시, 잠복결핵검진사업 실시
- 2020.01~2019.02 : 2019년 결핵관리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등록관리: 262명</li> <li>-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5명(3,307천원)</li> <li>-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22건</li> <li>-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3,391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1,144건</li> <li>-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4,632건</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등록관리: 217명</li> <li>-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1명(731천원)</li> <li>-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46건</li> <li>-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4,141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1,348건</li> <li>-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의료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등) : 592건</li> </ul>	
2019년 6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등록관리: 106명</li> <li>-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9건</li> <li>- 검진 : 결핵검진(흉부X선) 1,190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552건</li> <li>-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의료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등) 수요조사</li> </ul>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164,449	163,955	-	494	
2018년	112,877	93,858	-	19,019	
2019년	113,113	30,065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7급 이명옥 간호7급 정찬희	전화	5038 5044
-----	-------	-------------	-----	----------------------	----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보건사업과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P - 20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108
- 사업규모 : 9개 건강증진사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 개발 추진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된 9개의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행태 및 인식개선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감소 및 삶의질 향상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44,411	559,232	559,232	-	-	14,821	
국 비	272,206	279,616	279,616	-	-	7,411	
도 비							
시 비	272,205	279,616	279,616	-	-	7,41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소급 및 인력운영비 부족분 발생에 의한 통계목 변경
- 총 예산액 변경 없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사무관리비) 44,660천원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통계목 변경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근거내용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존 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질병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 편성된 사업 -
  - ①신체활동사업 ②절주사업 ③영양, 비만사업 ④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⑤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⑥구강보건사업 ⑦치매조기검진사업 ⑧한의약건강증진사업 ⑨모자보건사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37,000	△44,660
		· 신체활동프로그램 강사비:50,000원*10회*4월 = 2,000 · 교육용 책자 구입 3,000원*5,000부 = 15,000 ·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구입:2,000원*10,000개 = 20,000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 5,500 ·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홍보지 제작 : 1,300원*1,000부 = 1,300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인쇄물 제작 : 2,000원*2,100부 = 4,200	
인력운영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44,660	44,660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총559,232천원 = 사업비 418,286천원 + 인력운영비 140,946천원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8.09 :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
  - 2018.11 :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 2018.12 : 종합검토 및 기술지원 후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 2019.01 :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2019.03 : 평가(정성/핵심성과)
  - 2019.03~2019.12 : 사업집행(통합건강증진사업비:418,286천원, 인력운영비: 140,946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b>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b> ·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1,230회/14,776명 ·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539회/37,329명 · 생애주기별 절주사업: 403회/31,082 ·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및 홍보: 8회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 78회/13,458명 · 비만관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85회/2,387명 <b>구강보건사업 운영</b> ·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7,172회/44,050명 ·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50회/1,732명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128회/6,903명</li> <li>· 노인 구강보건 및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46회/1,458명</li> <li><b>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b></li> <li>· 고혈압·당뇨병 이동교실(교육, 검사 등) : 75회/1,463명</li> <li>·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 21회 1,041명</li> <li>·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 16회/ 465명</li> <li><b>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b></li> <li>·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936명, 건강서비스 : 4,769회, 자원연계 720명</li> <li>· 활력충전 재활프로그램 운영 : 57회 1,072명 참여</li> <li><b>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b></li> <li>· 한방기공체조교실: 792회/19,798명</li> <li>· 한방육아교실: 24회/533명</li> <li>· 한방중풍예방교실: 8회/565명</li> <li>· 한방자연건강마을: 16회/353명</li> <li><b>모자보건사업 운영</b></li> <li>·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2,405명</li> <li>· 임신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 175회/3,008명</li> <li>· 신혼부부, 임신부 검사 지원 : 1,841명</li> <li>·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9,010명</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b></li> <li>·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1,239 /16,300명</li> <li>·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380회/6,768명</li> <li>· 생애주기별 절주사업:207회/28,544명</li> <li>·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및 홍보: 5회/9,603명</li> <li>·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요리교실운영 : 80회/13,200명</li> <li>·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138회/3,004명</li> <li><b>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b></li> <li>· 고혈압· 당뇨 이동교실 : 72회 6,404명, 검사측정 : 4,167건</li> <li>·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 : 24회 878명 참여</li> <li>·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 : 25회/ 556명</li> <li><b>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b></li> <li>·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1,046명, 건강서비스 : 5,064회, 자원연계 1,223명</li> <li>· 활력충전 재활프로그램 운영 : 48회 955명 참여</li> <li><b>구강보건사업 운영</b></li> <li>·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6,941회/41,454명</li> <li>·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 110회/2,904명</li> <li>·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47회/1,053명</li> <li>·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 3,141회/10,960명</li> <li><b>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b></li> <li>· 한방기공체조교실: 865회/16,758명</li> <li>· 한방육아교실: 30회/474명</li> <li>· 한방중풍예방교실: 2회/281명</li> <li>· 한방자연건강마을: 24회/564명</li> <li><b>모자보건사업 운영</b></li> <li>·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3,375명</li> <li>· 임신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 164회/2,601명</li> <li>·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9,403명</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b></li> <li>·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 695회 9,404명</li> <li>·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 332회 11,457명</li> <li>· 생애주기별 절주사업 : 103회 17,399명</li> <li>·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및 홍보 : 2회</li> <li>·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요리교실운영 : 63회 5,200명</li> <li>·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33회 424명</li> </ul>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p><b>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혈압· 당뇨 이동교실 : 51회 926명, 검사측정 : 2,778건</li> <li>·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 : 15회 1,599명 참여</li> <li>·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 : 30회 428명</li> </ul> <p><b>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1,127명, 건강서비스 : 2,393회, 자원연계 105명</li> <li>· 활력충전 재활프로그램 운영 : 34회 672명 참여</li> </ul> <p><b>구강보건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 2,603회/19,518명</li> <li>·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 : 34회/2,299명</li> <li>·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40회/364명</li> <li>·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 158회/8,585명</li> </ul> <p><b>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기공체조교실 : 656회/12,212명</li> <li>· 한방육아교실 : 14회/189명</li> <li>· 한방중풍예방교실 : 3회/69명</li> <li>· 한방자연건강마을 : 8회/127명</li> </ul> <p><b>모자보건사업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1,479명</li> <li>· 임신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 63회/521명</li> <li>·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5,470명</li> </ul>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87,586	682,406		5,180	
2018년	544,411	544,411		0	
2019년	559,232	268,685		290,547	6.30. 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남상분	담당자	의료기술6급 김춘숙	전화	5010
-----	-------	------------	-----	------------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P - 20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규모 : 3,900명(중위소득 65% 이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하여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44,411	134,930	134,930	-	-	-409,481	'19년부터 통합사업에서 예산 분리
국 비	272,206	67,465	67,465	-	-	-204,741	
도 비							
시 비	272,205	67,465	67,465	-	-	-204,74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발생으로 통계목 변경
- 총 예산액 변경 없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5,323천원 감액하여, 인력운영비(영양플러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통계목 변경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근거내용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li> <li>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li> <li>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li> </ol>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019년도부터 시군별 대상자 대비 적정예산 비율로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 분리된 사업
-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
- 대상자별 월2회 각 가정으로 보충식품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신체계측 및 빈혈측정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책자 등 구입: 2,000원* 2종*1,250부 = 5,000 · 영양플러스사업 사무용품구입: 16,150원*20종 = 323	△5,323
인력운영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 5,323	5,323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총134,930천원 = 사업비 99,500천원 + 인력운영비 35,430천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식품공급업체선정(공개경쟁입찰)
- 2019.01~02 : 2018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019.01~2019.12 : 취약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 대상 월별 보충식품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등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 2019.04~2019.12 : 분기별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 2019.12 :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사후 빈혈 개선율 71% 달성 · 보충식품공급 월 2회배송, 24회/2,472명 · 영양교육 및 평가 2,148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간식실습 4회	
2018년	· 사후 빈혈 개선율 73% 달성 · 보충식품공급 월 2회배송, 24회/2,520명 · 영양교육 및 평가 2,232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간식실습 4회	
2019년	· 보충식품공급 월 2회배송, 12회/1,260명 · 영양교육 및 평가 1,203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간식실습 2회	'19.6.30.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687,586	682,406	0	5,180	'17년 예산현액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2018년	544,411	544,411	0	0	'18년 예산현액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2019년	134,930	63,062	0	71,868	'19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예산 분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남상분	담당자	보건7급 함문선	전화	5016
-----	-------	------------	-----	----------	----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P - 20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108
- 사업규모 : 김포시 전지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금연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 및 금연환경조성사업 강화로 간접흡연 예방

##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67,020	267,020	267,020	-	-		
국 비	133,510	133,510	133,510	-	-		
도 비							
시 비	133,510	133,510	133,510	-	-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발생으로 통계목 변경
- 총 예산액 변경 없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3,700천원 감액하여,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통계목 변경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25조, 제26조
근거내용	<p>제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p> <p>제9조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9조의5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제25조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p> <p>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
  - 생애주기별(미취학아동,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성인 금연교육
-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 이동금연클리닉, 야간금연클리닉
- 간접흡연의 위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조성
  - 금연구역(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등) 지정 및 금연표지판 설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안내판 설치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지도·단속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 금연상담용 홍보물 구입 : 2,000원*750개*2종 = 3,000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비 : 100,000원*7회 = 700	△3,70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 3,700	3,700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총 267,020천원 = 사업비 232,851천원 + 인력운영비 34,169천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12 :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금연구역 지정  
분기별 사업 실적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 운영
  - 2019.02 : 2018년 금연사업 결과 보고 및 2019년 금연사업 계획 수립
  - 2019.02 : 금연지도원 4명 위촉
  - 2019.04 :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 2020.01 : 2019년 금연사업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2,950명 금연교육 : 22,657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6,032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9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7개소	
2018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979명 금연교육 : 19,687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4,181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21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7개소(총 14개소)	
2019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238명 금연교육 : 6,511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3,353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17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8개소(총 22개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267,936	265,253	-	2,683	
2018년	267,020	264,917	-	2,103	
2019년	267,020	115,011	-	152,009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김영주	담당자	보건9급 김주영	전화	5030
-----	-------	------------	-----	----------	----	------

# (경기도 초등학교치과주치의 사업) (P - 20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108
- 사업규모 : 관내 초등학교 4학년 4,9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96,212	196,212		196,212	신규사업
국 비						
도 비		196,212	196,212		196,212	
시 비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8,212천원)중 5,000천원을 의료및구료비 통계목으로 변경
- 인구유입에 따른 사업대상 (4,700명 → 4,900명) 증가에 따른 검진비(의료및구료비)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 7조 제18조
근거내용	<p>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lt;개정 2015. 5. 18.&gt;</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lt;개정 2003. 7. 29.&gt;</p> <p>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신규■	계속■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구강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김포시 4학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관내 협약된 치과에서 구강진료를 받고 치과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함 (경기도 초등학교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검진서식지 인쇄비 (2,972부->2,000부) = 5,000	△5,0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과주치의검진: 40,000원*100명 = 4,000 · 학생 구강 검진: 7,240원*138명 = 1,000	5,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8. 10. 01: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시행
  - 2019. 03. 18. :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 및 선정
  - 2019. 04. 25. : 시군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9. 05. 01. : 초등학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1회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2,999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96,212	73,940	0	122,272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남상분	담당자	간호7급 이숙진	전화	5021
-----	-------	------------	-----	----------	----	------

# (건강증진센터 운영) (P - 20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0,0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체력측정 및 체성분 검사로 개인의 특징에 맞는 운동처방 지도를 하여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900	12,770			9,870	
국 비						
도 비						
시 비	2,900	12,770		12,770	9,87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건강증진센터 주요 사용 장비(러닝머신, 싸이클) 고장 및 노후에 따른 교체
- 노후장비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장비 교체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
근거내용	제6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②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앞으로의 건강대책은 치료의학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의학으로 바뀌는 추세로 체력측정, 신체활동 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
- 건강증진센터 사용 장비 29종 중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장비 23종
- 2019년 상반기 주요장비(러닝머신, 싸이클) 고장으로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
- 러닝머신(2002년도 구입)·싸이클(2000년도 구입) 노후장비로 수리 불가, 교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 교체 러닝머신 3,650,000원*3종 = 10,950 싸이클 1,820,000원*1종 = 1,820	12,77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9.01 : 2018년도 결과 보고 및 2019년 추진계획수립
- 2019.01 ~ 2019.12 :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건강증진센터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내 건강 알기 사업 : 13,558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헬스업 운동교실 운영 : 417회/14,219명(연인원)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1,411명	
2018년	○ 내 건강 알기 사업 : 1,935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헬스업 운동교실 운영 : 20회/329명(연인원) ○ 건강100세 운동교실 운영 : 98회/1,957명(연인원)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895명	상반기 별관 증축공사
2019년	○ 헬스업 운동교실 운영 : 35회/856명 ○ 건강100세 운동교실 운영 : 71회/2,086명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818명 ○ 건강증진센터 이용 : 5,005명	2019.06.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4,000	3,986		14	
2018년	2,900	2,900		-	
2019년	2,760	1,892		868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남상분	담당자	보건9급 오수희	전화	5046
-----	-------	------------	-----	----------	----	------

#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 (P - 202)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5,50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C)	1회 추경(D)	2회 추경(E)		
계	85,646	87,188	87,188			1,542	
국 비	42,823	43,594	43,594			771	
도 비							
시 비	42,823	43,594	43,594			771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계획이었으나 5차례 채용공고(4차부터 채용분야 확대, 근무시간 단축)에도 1명만 채용되어 인건비잔액 26,400천원 발생, 인건비잔액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여 방문대상자 의료지원품과 방한용품 구입에 사용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제3조(책임) 제1항/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근거내용	-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제5호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필요성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 주요사업내용 : 취약계층 발굴 및 등록, 기초건강 및 만성질환관리,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 사업비 산출내역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내여비 →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현액	증액	감액	변경후 예산액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41,108		△24,900	16,208
	여비	국내여비(202-01)	2,400		△1,500	9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3,680	5,000		8,680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40,000	21,400		61,400

○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조정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2,490,000원 * 1명 * 8월 = 19,920 - 2,490,000원 * 1명 * 2월 = 4,980	△24,900
	202-01 국내여비	·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여비 - 150,000원 * 1명 * 8월 = 1,200 - 150,000원 * 1명 * 2월 = 300	△ 1,500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 2,000원 * 2,500명 = 5,000	5,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영양제 : 5,500원 * 2,400명 = 13,200 · 외용 소염진통제 : 1,110원 * 3,000명 = 3,330 · 특수영양식이 : 30,000원 * 30명 = 900 · 성인용기저귀 : 8,200원 * 60명 = 492 · 황사마스크 : 940원 * 3,700명 = 3,478	21,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 ~ 2019.01 : 2018년 방문건강관리사업 결과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수립
- 2019.01 ~ 2019.12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2019.03 ~ 2019.03 : 의료지원물품 구입
- 2019.03 ~ 2019.05 :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 5차례 채용공고, 1명 채용
- 2019.06 ~ 2019.12 : 상·하반기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2019.12 ~ 2019.12 : 2019년 경기도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자료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방문등록관리 : 4,805가구/ 건강관리 : 17,630회/ 의료물품 지원 : 2,641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4,794건/ 보건소 외 1,916건 · 장애인, 독거노인 사회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 65회/ 59명/ 765명 참여	
2018년	· 방문등록관리 : 5,958가구/ 건강관리 : 17,965회/ 의료물품 지원 : 3,610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3,286건/ 보건소 외 3,456건 · 장애인, 독거노인 사회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 57회/ 91명/ 932명 참여	
2019년	· 방문등록관리 : 5,389가구/ 건강관리 : 9,241회/ 의료물품 지원 : 2,997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1,804건/ 보건소 외 809건 · 장애인, 독거노인 사회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 34회/ 36명/ 535명 참여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2017년	48,830	48,035	-	795	'17년 예산현액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2018년	85,646	84,965	-	681	'18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예산 분리
2019년	87,188	44,268	-	42,920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최계숙	담당자	간호7급 최보라	전화	5033
-----	-------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P - 20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35,212	88,200	134,000		-45,800	-147,012	
국 비	117,606	44,100	67,000		-22,900	-73,506	
도 비	58,803	22,050	33,500		-11,450	-36,753	
시 비	58,803	22,050	33,500		-11,450	-36,753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460(2019.07.16.시행) 관련, 예산 45,800천원 감액 변경내시
  - 선택진료비 폐지 및 진료비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의한 예산 조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 2
근거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내용 :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의료비 및 선천성이상 치료 위하여 입원 수술한 의료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민간이전	307-01 의료및구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882,000원*100명 = 88,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 경위

· 2019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2018년 다자녀(3명 이상)가구 → 2019년 다자녀(2명 이상)가구)

- 지원절차

· 대상자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접수

· 보건소 : 대상자 자격판정 후 통보, 지원금 입금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84명	
201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19명	
2019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51명(6월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05,762	305,689		73	
2018년	235,212	194,321		40,891	
2019년	134,000	34,788		99,212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8급 김향숙	전화	5487
-----	-------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P - 20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2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 예방 및 영유아 건강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0,032	72,600	48,000		24,600	-17,432	
국 비	45,016	36,300	24,000		12,300	-8,716	
도 비	22,508	18,150	12,000		6,150	-4,358	
시 비	22,508	18,150	12,000		6,150	-4,358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460(2019.07.16.시행) 관련, 예산 24,600천원 증액 변경내시
- 환아관리비(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지원)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부족으로 예산 증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 예방 및 영유아 건강증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지원 및 환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o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573,750원*10명*12월 = 68,850 o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 지원 :250,000원*15명 = 3,750	72,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 경위

- 2019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선별/확진 검사비 : 2018년 다자녀(3명 이상)가구 → 2019년 다자녀(2명 이상)가구
- 환아 지원나이 : 2018년 18세 이하 → 2019년 만19세 미만

– 지원절차

- 대상자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접수
- 보건소 : 대상자 자격판정 후 통보, 지원금 입금

환아 등록 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헛반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25만원 한도/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3,762명 · 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관리 : 57명(의료비 10명)	
2018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3,286명 · 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관리 : 56명(특수조제 34명, 의료비 22명)	
2019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0명(2019년부터 출생 후 입원 중 검사 시, 전액 무료) · 선천성대사이상아 등록관리 : 19명(특수조제 7명, 의료비 12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91,400	91,393		7	
2018년	90,032	89,934		98	
2019년	48,000	31,899		16,101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8급 김향숙	전화	5487
-----	-------	------------	-----	----------	----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체]) (P - 20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4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후조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7,005	45,000	228,000		-183,000	-2,005	
국 비							
도 비							
시 비	47,005	45,000	228,000		-183,000	-2,005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자체시비 대상자(셋째아 이상 중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소로 감액
  - 국도비 지원사업 지원기준(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 확대로 대상자 감소
  - 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최소:386,000원~최대:1,111,000원) 발생으로 서비스 신청 저조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을 제고
- 대상 : 셋째아 이상 중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한 출산 가정(산모 거주기간 1년 이상)
- 내용 :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해 주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체)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셋째아) : 1,000,000원*45명 = 45,000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 추진 경위

- 2018년 8월 : 2차추경 예산 확보, 기준중위소득 80% 초과한 셋째아 이상 지원 시작
- 2019년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한 셋째아 이상 지원 추진
- ※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

#### – 지원절차

- 대상자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접수
- 보건소 : 대상자 자격판정 후 통보,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 사회보장정보원 :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 당해년도 예탁금 잔액은 다음해 3월 최종 정산 후 반납 처리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8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2명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명(6월말)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7,005	15,565		31,440	
2019년	228,000	19,717		208,283	6.30. 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보건7급 최숙경	전화	5482
-----	-------	------------	-----	----------	----	------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P - 204)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사업규모 : 1,00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재활 통해, 난청으로 인한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액 (A)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468	29,200	44,000	-14,800	13,732	
국 비	7,734	14,600	22,000	-7,400	6,866	
도 비	3,867	7,300	11,000	-3,700	3,433	
시 비	3,867	7,300	11,000	-3,700	3,433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460(2019.07.16.시행)호 관련, 예산 14,800천원 감액 변경내시
- 2019년부터 신생아 출생 후 병원입원 중 청각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으로 감액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재활 통해, 난청으로 인한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고자 함
- 대상
  - 신생아 청각검사비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환아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36개월 미만)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내용 : 신생아 청각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난청환아관리 (보청기 지원)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307-01 의료및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보청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보청기 1,300,000원*2명 = 2,600</li> <li>·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25,876원*1,000명 = 25,876</li> </ul> </li> <li>○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사업비 724 = 724</li> </ul>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 경위
  - 2019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신생아 청각 검사비 : 2018년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지원절차

- 대상자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접수
- 보건소 : 대상자 자격판정 후 통보, 지원금 입금  
난청환아 등록후,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난청환아관리팀 심사 → 난청아 가정에 지원 가능 여부 통보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1,248명	
2018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555명	
2019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2018년 미지급분 55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7년	33,932	<b>32,318</b>		1,614	
2018년	15,468	<b>15,431</b>		37	
2019년	44,000	<b>2,175</b>		41,825	6.30.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8급 김향숙	전화	5487
-----	-------	------------	-----	----------	----	------